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변천 및 관련 조세·재정 정책 효과 분석

2011. 5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구 성

1. 배경 및 연구의 목적
2. 분석자료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5. 조세 · 재정지출의 귀착분석

1. 배경 및 연구의 목적

1. 배경 및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1980년대 이후 불평등도가 크게 완화
 - 1990년대말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급속히 확대 반전
 - 2000년대 이후 완만한 소득불평등 확대추세 지속

- 소득불평등 확대 원인 분석 및 소득재분배에 대한 요구 급증
 - 세제의 누진도 강화 요구 증대
 - ※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서로 다른 개념
 -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 증대
 - ‘성장 우선’ vs ‘분배 우선’ 논쟁으로의 점화
 - 소득분배구조 및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에 대한 엄정한 연구 및 이해 부족

- 조세·재정지출의 성과 및 형평효과 분석을 위한 계층별 귀착 분석에 대한 요구 증대

1. 배경 및 연구의 목적

- 소득분배 구조 및 변화요인 분석
 -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고찰
 -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의 변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비교
- 소득재분배 효과의 이해
 - 조세·재정을 통한 정부활동의 결과로서 계층별 부담·수혜구조를 파악
 - 부담·수혜 총액 비교뿐만 아니라 계층별 부담구조도 정책 분석·결정에 필요
 - 흔히 이를 Tax-Benefit 효과분석이라고 지칭
- 국제비교를 통한 재분배 정책방향의 전망 및 제언
 - 주요 선진국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와 비교
 - 선진국(영국)의 소득계층별 순수혜 분포와 비교
-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잠재적) 정책수용가능성 검토
 - 소득계층별 수혜·부담 분포의 추계를 통한 가상적 정책조합에 대한 채택 가능성 분석

2. 분석자료

2. 분석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가. 기술통계

〈표 1〉 2009년도 가계조사자료의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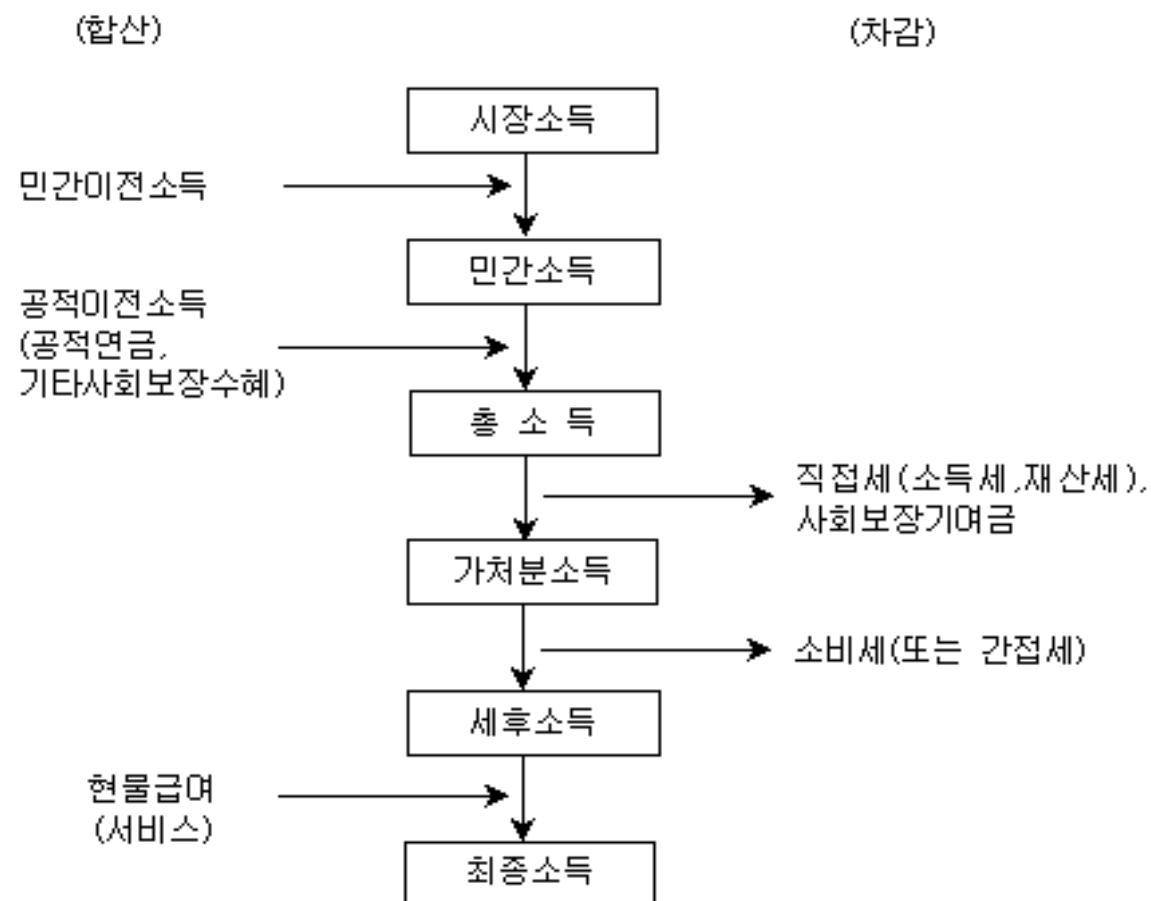
(단위: 천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가구주 연령(세)	50.19	13.78	92	19
가구원 수(명)	2.96	1.3	9	0
취업인 수(명)	1.29	0.9	5	0
시장소득	36,191	25,657	304,105	0
총소득	39,616	24,680	304,105	0
가처분소득	36,579	21,591	234,833	-3,774
소비지출	22,514	14,411	172,818	1,094
근로·종합소득세	1,283	2,514	56,875	0
재산세	151	367	12,360	0
사적이전소득	1,771	5,748	66,092	0
공적이전소득	1,654	4,477	52,477	0
사회보장기여금	1,732	1,704	14,940	0
주: 자료의 연간화, 계절성 및 선택편의 제거 후 5,197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2. 분석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나. 소득의 종류

[그림 1] 단계별 소득의 종류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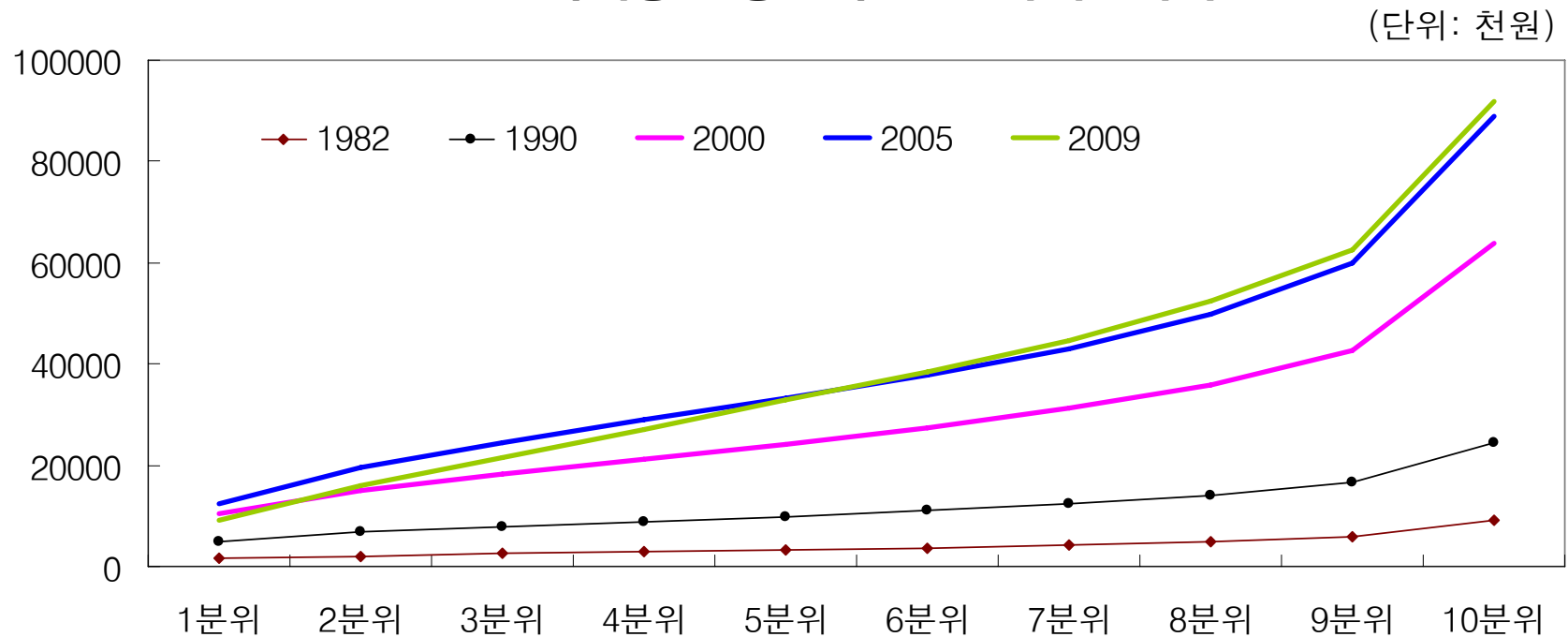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가.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분포

□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 특징: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소득이 가속적으로 증가

- 2005년과 2009년의 경우 총소득 수준이 대체로 비슷하나,
- 2009년에는 다수의 노인가구가 포함된 1인 가구 포함 평균소득

[그림 2]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가계조사자료)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가.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분포

〈표 2〉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가계조사자료)

(단위: 천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82	1,502	2,081	2,443	2,823	3,170	3,567	4,114	4,856	5,909	9,078	3,954
1983	1,636	2,256	2,697	3,120	3,553	3,991	4,541	5,334	6,464	9,738	4,333
1984	1,794	2,531	3,055	3,488	3,943	4,483	5,038	5,864	7,198	10,801	4,820
1985	1,968	2,751	3,256	3,677	4,078	4,577	5,209	6,038	7,395	11,349	5,030
1986	2,182	3,122	3,692	4,184	4,732	5,337	6,013	6,971	8,511	12,603	5,735
1987	2,608	3,608	4,200	4,861	5,471	6,150	7,030	8,226	10,009	15,138	6,730
1988	3,133	4,391	5,222	5,942	6,670	7,469	8,489	9,692	11,796	17,733	8,052
1989	3,886	5,401	6,383	7,263	8,103	9,078	10,242	11,788	14,277	21,713	9,813
1990	4,890	6,715	7,817	8,830	9,816	10,982	12,303	14,040	16,762	24,415	11,655
1991	5,982	8,240	9,601	10,893	12,175	13,639	15,192	17,242	20,146	28,178	14,128
1992	6,896	9,656	11,290	12,760	14,187	15,851	17,609	19,748	23,495	32,954	16,445
1993	7,442	10,384	12,182	13,815	15,446	17,057	19,008	21,423	24,865	36,083	17,771
1994	8,343	11,770	13,785	15,582	17,392	19,489	21,834	24,767	29,081	40,070	20,214
1995	9,342	13,378	15,715	17,753	19,946	22,214	24,897	28,372	33,124	45,305	23,003
1996	10,275	14,703	17,258	19,785	22,371	25,018	28,083	31,703	36,862	51,374	25,745
1997	6,966	13,373	17,105	20,152	22,951	25,686	29,057	33,135	39,042	55,514	26,299
1998	5,070	10,054	13,777	16,833	19,768	22,521	25,778	29,695	35,405	51,466	23,036
1999	9,510	13,822	16,666	19,107	21,748	24,515	27,796	32,051	37,865	53,994	25,708
2000	10,322	15,129	18,250	21,143	24,250	27,425	31,160	35,978	42,797	63,685	29,017
2001	11,363	16,323	19,371	22,316	25,283	28,596	32,539	37,804	44,967	65,205	30,376
2002	11,489	16,727	20,361	23,963	27,169	31,007	35,114	40,737	48,860	70,491	32,593
2003	11,614	17,940	22,345	26,177	30,133	34,039	38,755	44,833	52,723	77,084	35,566
2004	12,187	19,023	23,588	27,862	32,046	36,648	41,630	48,125	57,539	84,156	38,282
2005	12,307	19,486	24,580	28,915	33,143	37,828	43,110	49,702	60,094	88,849	39,804
2006	8,936	15,346	20,569	25,343	30,541	35,992	41,907	49,055	59,083	87,782	37,455
2007	8,847	15,431	21,005	26,502	31,482	36,910	43,034	50,318	61,115	91,315	38,602
2008	8,828	15,128	20,987	26,492	31,920	37,471	43,713	51,535	62,774	94,407	39,324
2009	8,961	15,990	21,597	27,117	32,752	38,412	44,739	52,345	62,567	91,700	39,616

주: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단위 가구, 2006년부터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가구 대상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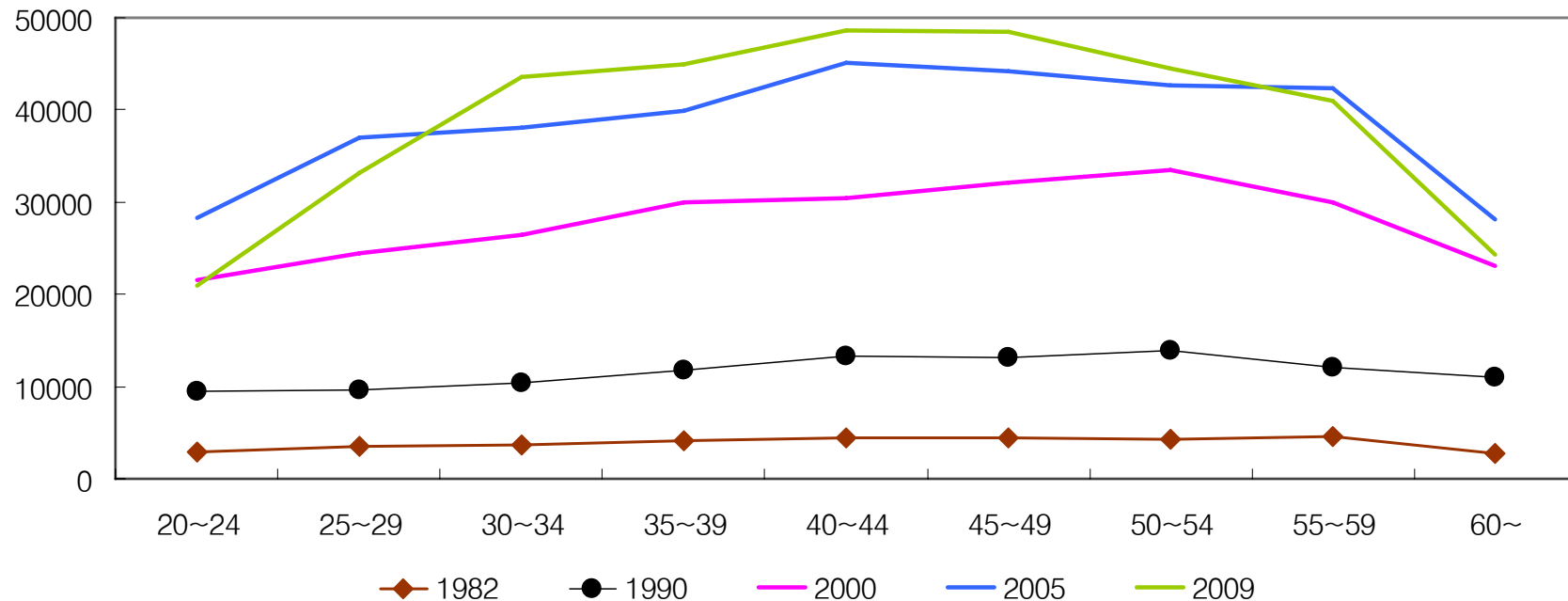
가.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분포

□ 연령별 총소득 분포의 특징

- 역U자형
- 시장진입기인 청년층(20대)과 은퇴기 이후의 연령층(50대 후반 이후)에서 평균 소득이 낮은 반면, 중·장년층에서 평균소득이 높은 구조

[그림 3] 연령별 총소득 분포(가계조사자료, 2009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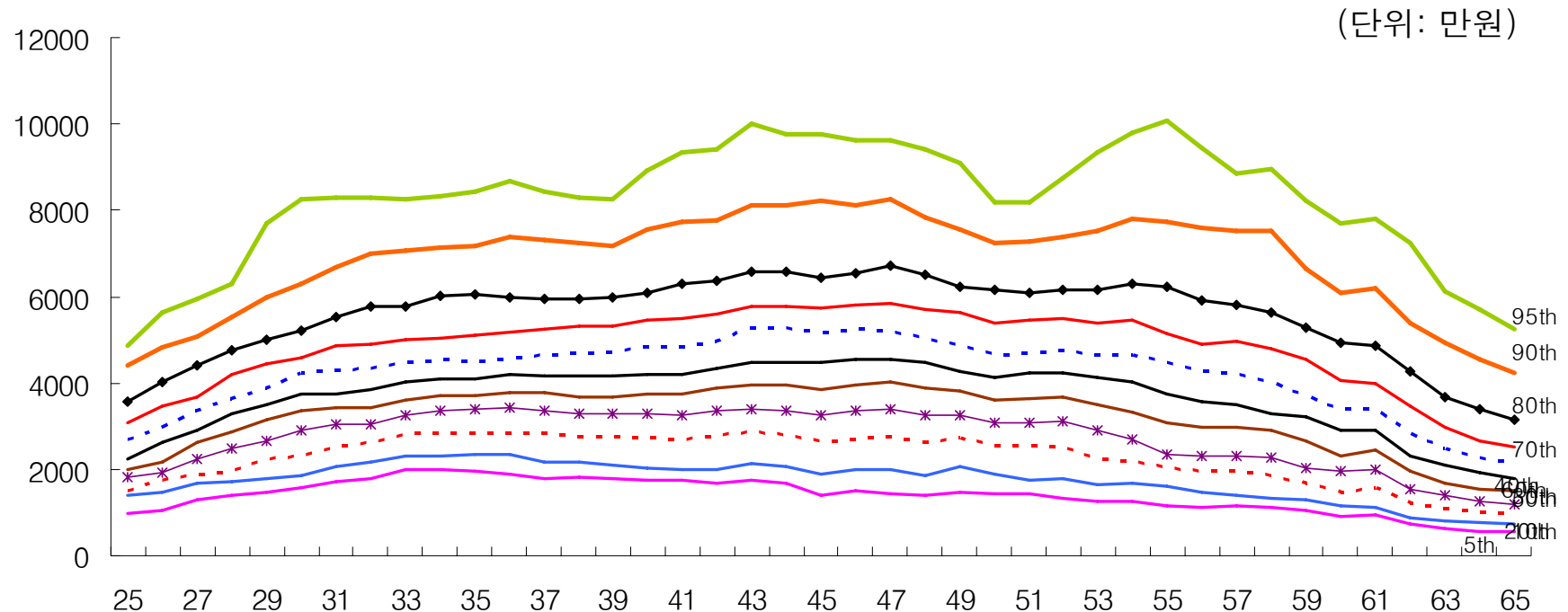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가.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분포

□ 연령별·소득백분위수별 총소득 분포 특징

- 역U자형 ([그림 4], [그림 5] 참조)
- 최고소득 획득 연령은 고소득층일수록 높아지는 경향
- 시장선택(Market Selection): 고생산성 소유자일수록 시장에 오래 잔존
- 고소득백분위일수록 소득확장기가 길고, 저소득백분위일수록 소득수축기가 김.

[그림 4] 연령별·소득백분위수별 총소득 분포(가계조사자료,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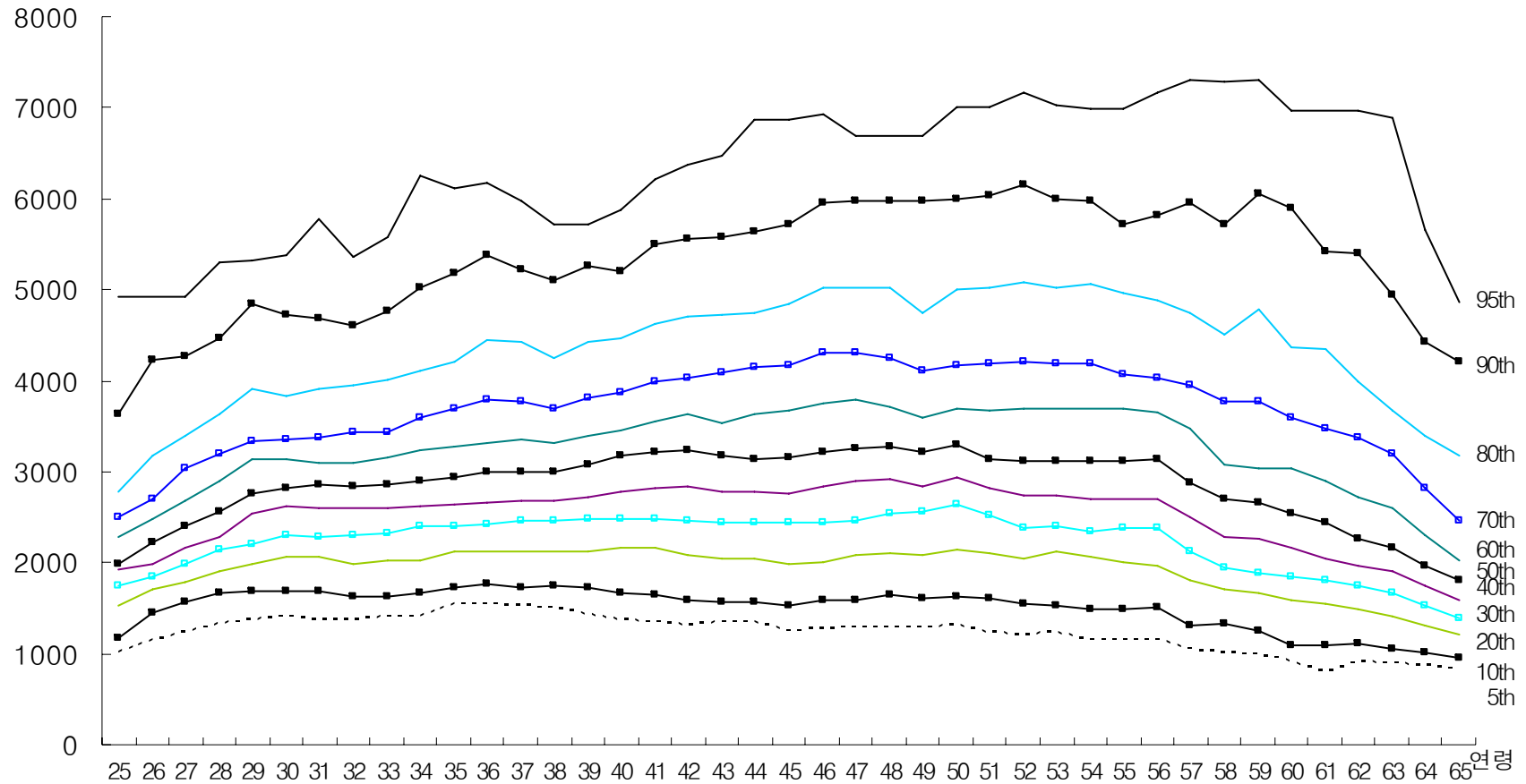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가.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분포

[그림 5] 연령별·소득백분위수별 총소득 분포(가계조사자료, 2002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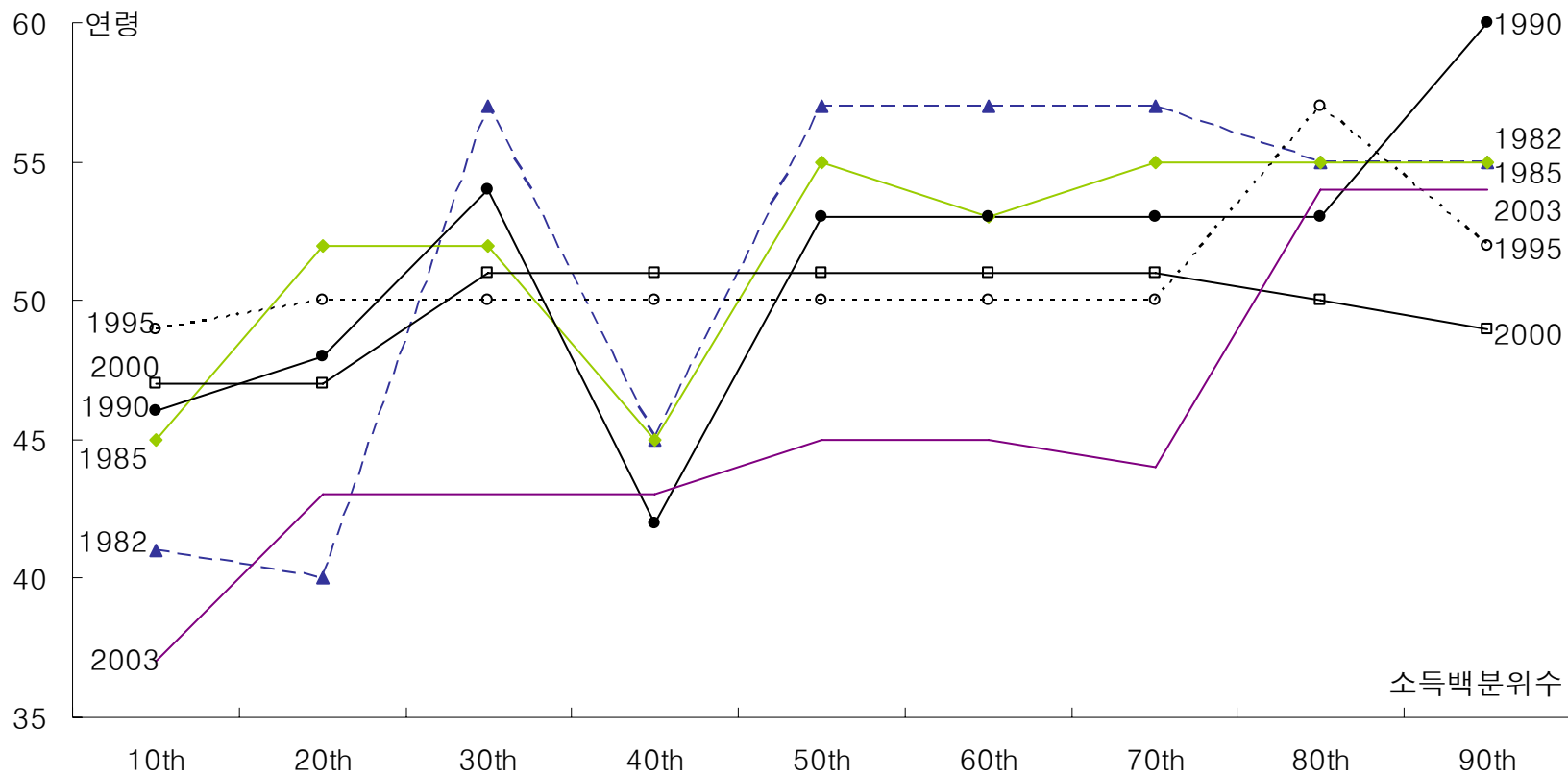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가.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분포

[그림 6] 주요 총소득 백분위수별 최고소득 획득연령 1 (가계조사자료)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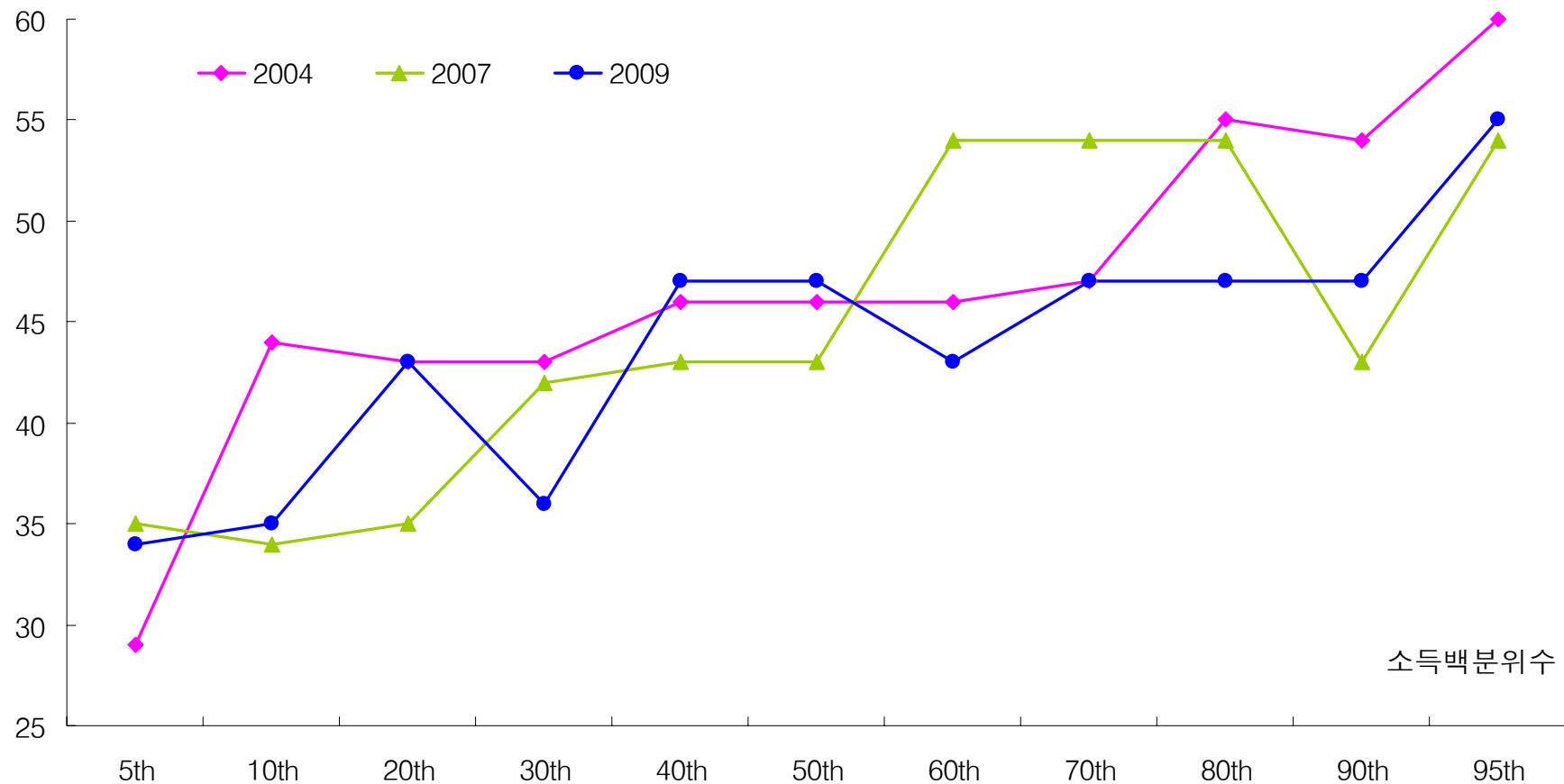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가.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분포

[그림 7] 주요 총소득 백분위수별 최고소득 획득연령 2 (가계조사자료)

(단위: 세)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가.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분포

〈표 3〉 주요 총소득 백분위수별 최고소득 획득연령(가계조사자료)

(단위: 세)

	5백분위	10백분위	20백분위	30백분위	40백분위	50백분위	60백분위	70백분위	80백분위	90백분위	95백분위
1982	41	41	40	57	45	57	57	57	55	55	55
1983	36	41	41	41	51	51	50	50	46	54	51
1984	37	38	49	50	50	56	56	56	47	50	45
1985	36	45	52	52	45	55	53	55	55	55	54
1986	36	41	39	47	56	50	48	48	48	58	49
1987	29	42	49	48	48	50	57	52	53	57	60
1988	53	51	53	51	51	53	52	52	52	64	64
1989	37	45	53	43	51	51	56	56	57	57	56
1990	48	46	48	54	42	53	53	53	53	60	60
1991	38	47	46	53	54	53	54	54	58	58	58
1992	38	48	56	56	56	45	45	46	59	54	54
1993	41	48	48	48	49	54	55	55	55	55	61
1994	31	48	56	56	48	54	53	54	60	56	56
1995	48	49	50	50	50	50	50	50	57	52	59
1996	51	51	50	51	51	52	52	52	56	57	52
1997	51	51	51	51	51	53	53	53	57	59	59
1998	33	46	47	47	47	46	52	51	51	61	61
1999	40	33	47	47	47	50	45	51	56	51	53
2000	47	47	47	51	51	51	51	51	50	49	55
2001	36	36	47	45	46	45	45	50	53	56	51
2002	36	36	40	50	50	50	47	47	52	52	57
2003	50	31	43	47	45	48	47	46	54	59	54
2004	29	44	43	43	46	46	46	47	55	54	60
2005	31	35	41	42	43	44	47	48	43	50	50
2006	40	42	42	42	43	45	43	49	42	43	49
2007	35	34	35	42	43	43	54	54	54	43	54
2008	32	32	32	32	43	43	52	51	51	52	54
2009	34	35	43	36	47	47	43	47	47	47	55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나.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

- 1980년대 ~ 1990년대 초: 상대소득격차 축소
 - Kuznets의 역U자 가설 중 후기 단계
- 1990년대 초~중반:
 - 지니계수가 저점 부근에서 안정적인 모습
-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대소득격차 확대추세로 반전
 - 단, 1997~1998년은 외환·경제위기로 overshooting
 - 2000년대 이후 지니계수는 완만한 상승 추세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전개
 - 2가지 요인 모두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
 -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선진국에서는 70년대말~8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전개되면서 소득불평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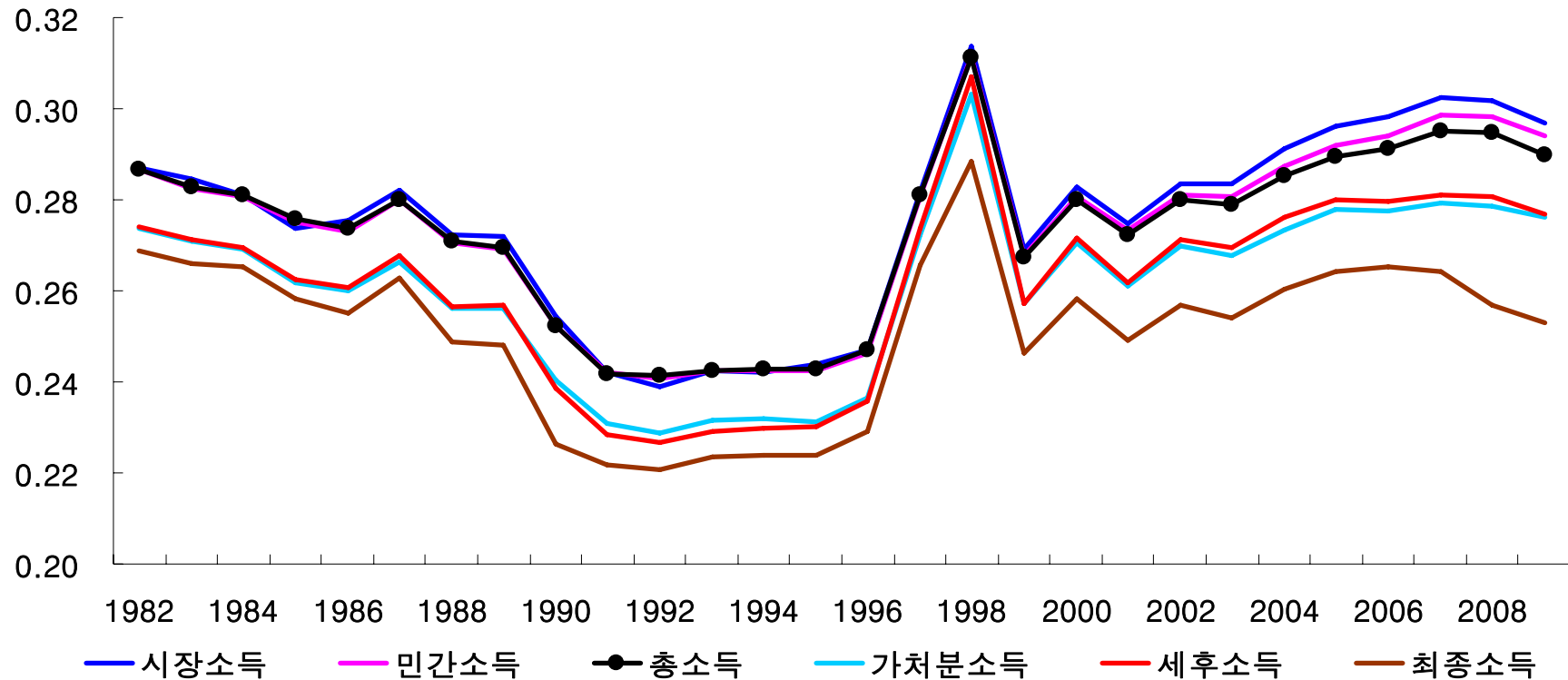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나.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

□ 1997~1998년의 외환 및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약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완만한 U자형

○ 각 소득지니간 거리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를 나타냄.

[그림 8] 소득종류별의 지니계수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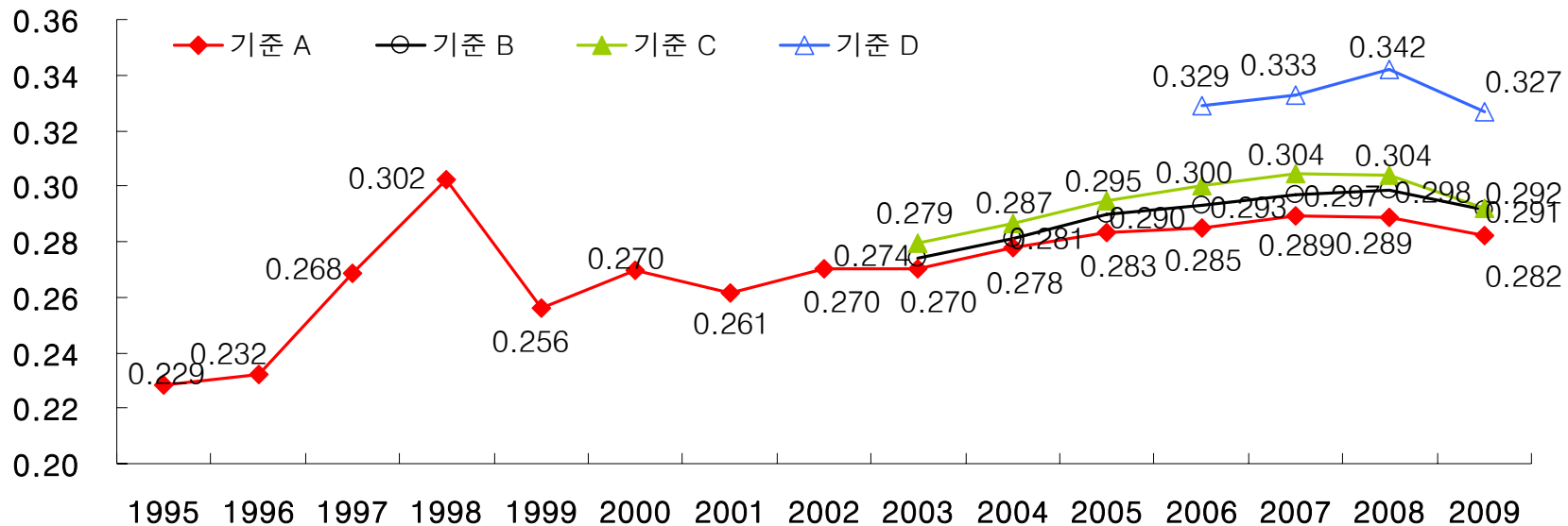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나.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

- 표본 범위(도시지역 vs 읍면지역, 또는 1인 가구 포함 여부 등)의 차이에 따라 상대소득불평등도가 상당한 차이를 시현
 - 읍면지역 포함하거나 1인 가구 포함할수록 지니가 상승
 - 읍면지역 거주가구와 1인 가구(상당수 노인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아 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하기 때문

[그림 9] 시장소득 지니계수 변화추이 (균등화 지수 적용 소득순위 기준)



주: 기준 A - 도시가계(1인 가구 제외), 근로자외가구의 경우에는 세부소득항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총소득 이외의 경우 0원으로 처리
기준 B - 도시가계(1인 가구 제외)(실질총소득은 A와 동일)
기준 C - 전국단위 가구(단, 1인 가구 제외)
기준 D - 전국단위 가구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다. 소득불평등 구조의 특징: 연령과 소득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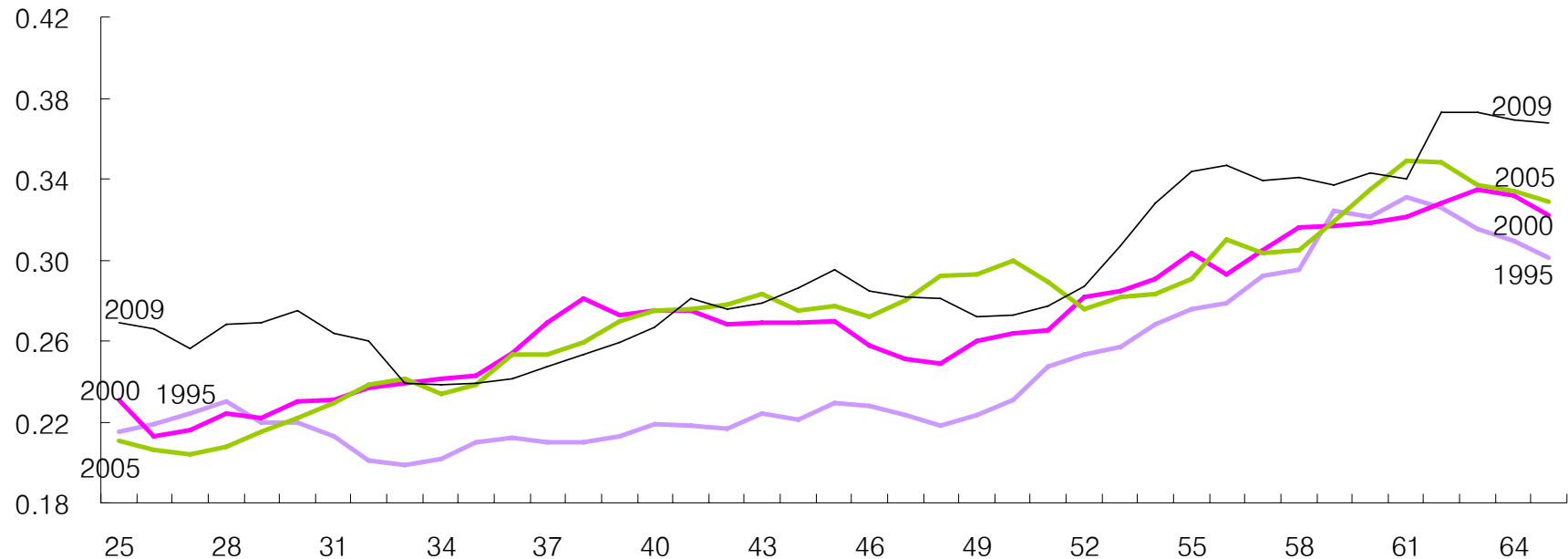
□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소득불평등도가 확대**

○ 시장에서 **소득획득력 차이**에 기반한 시장선택 효과가 누적되기 때문

– 단, 고연령층일수록 최저 vs 최고소득 절대소득수준의 차이는 축소

○ **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

[그림 10] 연령대별 지니계수의 특징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다. 소득불평등 구조의 특징: 연령과 소득불평등

〈표 4〉 연령대별 지니계수

	1982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1982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5	0.240	0.261	0.238	0.215	0.231	0.211	0.269	46	0.291	0.256	0.252	0.228	0.258	0.272	0.285
26	0.241	0.230	0.219	0.219	0.213	0.206	0.266	47	0.304	0.265	0.246	0.223	0.251	0.280	0.282
27	0.247	0.223	0.212	0.224	0.216	0.204	0.256	48	0.313	0.269	0.239	0.218	0.249	0.292	0.281
28	0.246	0.230	0.208	0.230	0.224	0.208	0.268	49	0.325	0.289	0.249	0.223	0.260	0.293	0.282
29	0.241	0.221	0.194	0.220	0.222	0.215	0.269	50	0.328	0.297	0.257	0.231	0.264	0.300	0.273
30	0.239	0.228	0.208	0.220	0.230	0.222	0.275	51	0.330	0.299	0.262	0.247	0.265	0.289	0.277
31	0.245	0.225	0.218	0.213	0.231	0.229	0.264	52	0.327	0.307	0.268	0.253	0.282	0.276	0.287
32	0.252	0.244	0.227	0.201	0.237	0.238	0.260	53	0.322	0.325	0.269	0.257	0.285	0.282	0.307
33	0.254	0.258	0.232	0.199	0.239	0.241	0.239	54	0.321	0.360	0.268	0.268	0.291	0.283	0.328
34	0.260	0.248	0.233	0.202	0.241	0.234	0.238	55	0.331	0.380	0.281	0.276	0.303	0.291	0.344
35	0.271	0.256	0.234	0.210	0.243	0.238	0.239	56	0.315	0.383	0.293	0.279	0.293	0.310	0.347
36	0.272	0.244	0.227	0.212	0.254	0.253	0.241	57	0.288	0.366	0.317	0.292	0.305	0.303	0.339
37	0.279	0.240	0.224	0.210	0.269	0.253	0.247	58	0.286	0.353	0.320	0.295	0.316	0.305	0.341
38	0.281	0.244	0.225	0.210	0.281	0.259	0.253	59	0.282	0.327	0.342	0.324	0.317	0.319	0.337
39	0.283	0.245	0.227	0.213	0.273	0.270	0.259	60	0.297	0.333	0.345	0.321	0.318	0.335	0.343
40	0.294	0.261	0.231	0.219	0.275	0.275	0.267	61	0.334	0.331	0.337	0.331	0.321	0.349	0.340
41	0.287	0.260	0.237	0.218	0.275	0.276	0.281	62	0.363	0.329	0.347	0.326	0.328	0.348	0.373
42	0.279	0.259	0.252	0.217	0.268	0.278	0.276	63	0.357	0.303	0.340	0.315	0.335	0.337	0.373
43	0.273	0.266	0.243	0.224	0.269	0.283	0.279	64	0.371	0.294	0.335	0.309	0.332	0.334	0.369
44	0.283	0.267	0.244	0.221	0.269	0.275	0.286	65	0.347	0.297	0.348	0.301	0.322	0.329	0.368
45	0.281	0.256	0.249	0.229	0.270	0.277	0.295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다. 소득불평등 구조의 특징: 실업률과 지니계수

□ 실업률과 지니계수

- 실업률, 무직가구, 지니계수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 존재 ([그림 11] 참조)
- 1980~1990년대초: 실업률이 4%대 중반에서 2%대로 낮아지면서 지니계수도 작아짐.
- 다만 1990년대말부터는 인구의 고령화 효과가 가시화

□ 실업률이 상승할수록 무직가구비율도 증가 ([그림 11] 참조)

- 따라서 **무직가구 비율의 증가는 소득불평등 확대**를 의미 ([그림 12] 참조)
- 무직가구비 상승의 소득불평등 확대기여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완만하게 증가
- 경제위기 기간에는 무직가구의 빈곤갭이 극단적으로 확대 ([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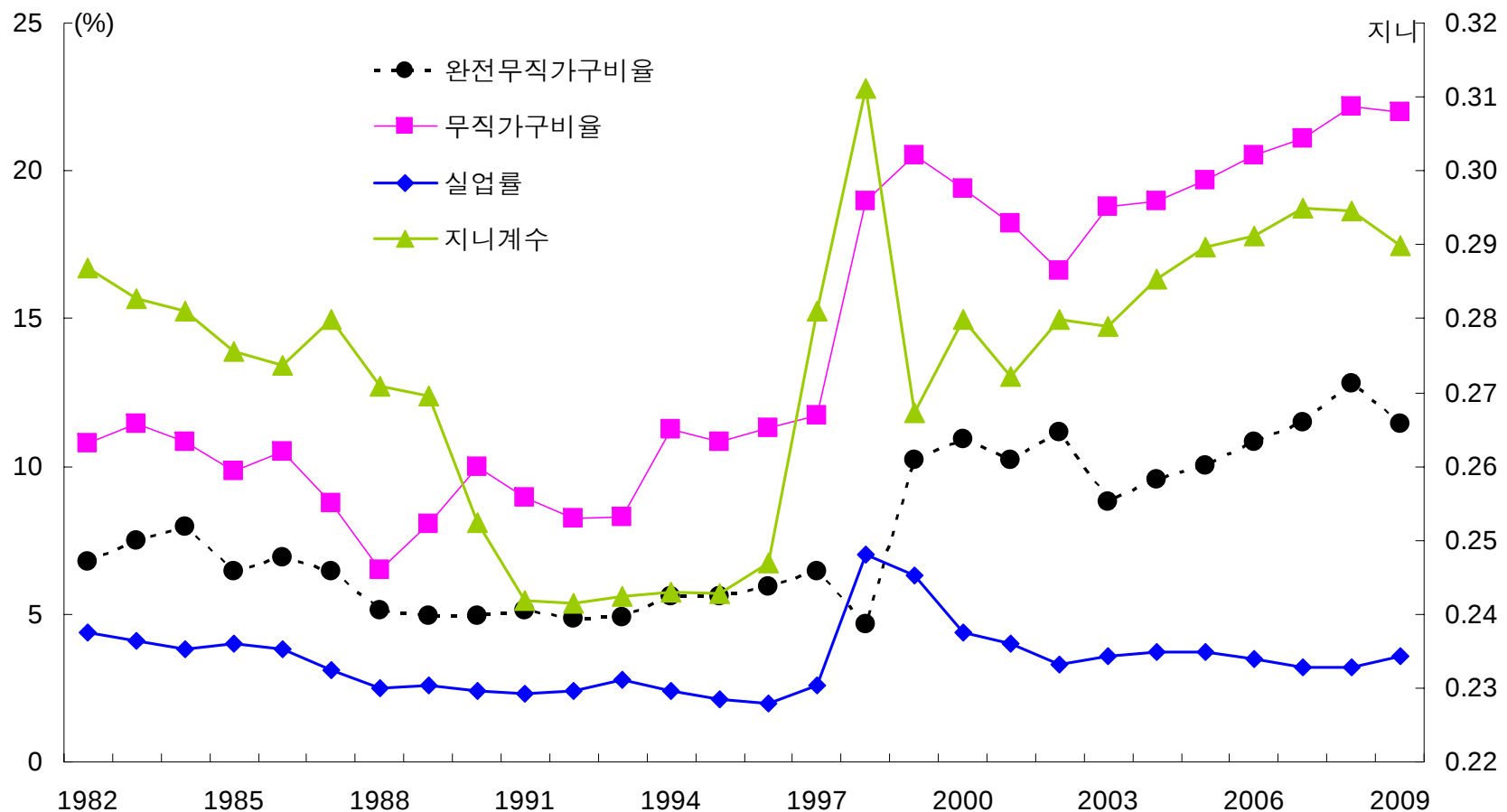
□ 실업률보다 무직가구비율이 높은 이유

- 무직가구는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로 정의
 - 무직가구라고 해도 배우자나 기타 가구원은 취업자인 경우가 다수 존재
- 은퇴가구는 무직가구에 포함되나 실업률 통계에는 포착되지 않기 때문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다. 소득불평등 구조의 특징: 실업률과 지니계수

[그림 11] 무직가구비율과 실업률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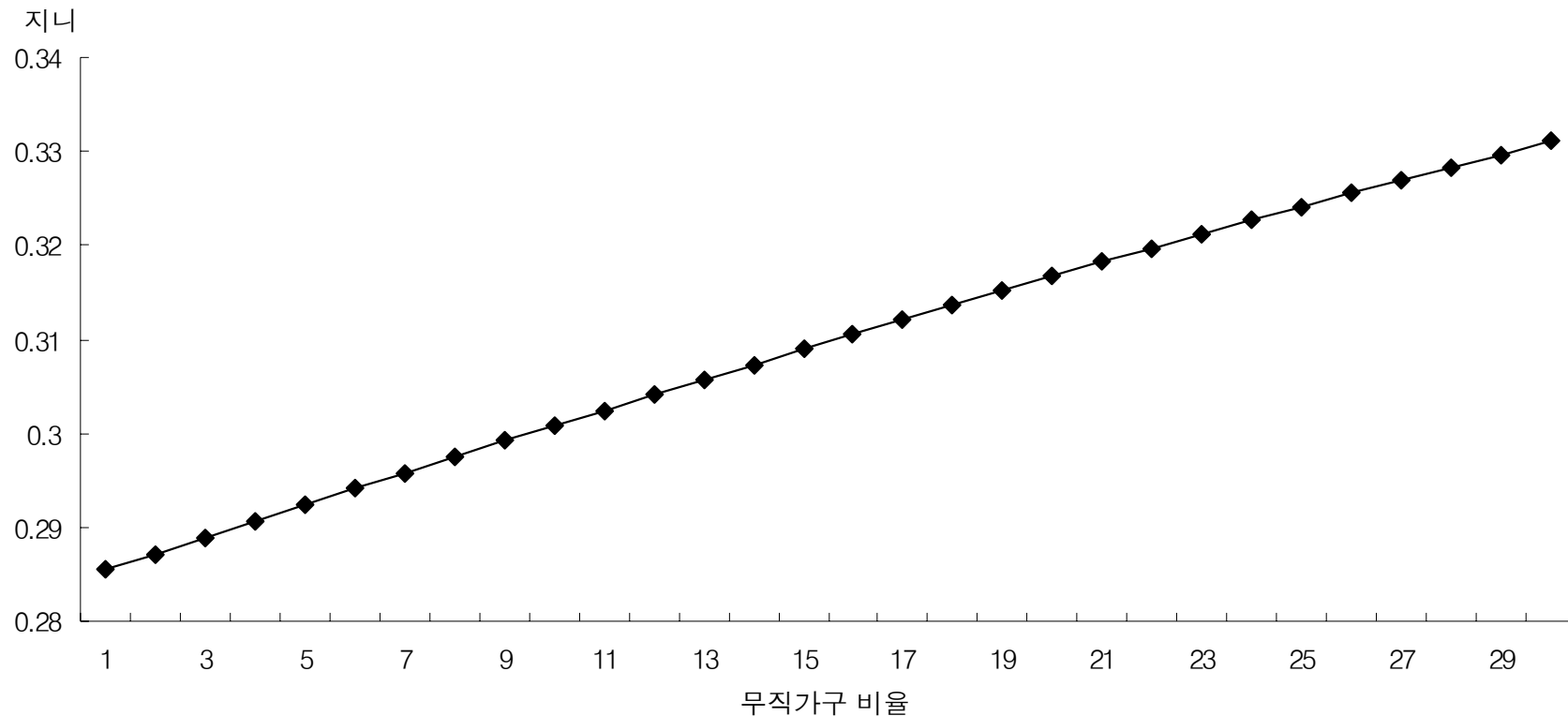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다. 소득불평등 구조의 특징: 실업률과 지니계수

□ 무직가구비율의 증가는 거의 선형적으로 소득불평등도(지니)를 악화시킴.

**[그림 12] 무직가구비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효과
(2009년 대상 모의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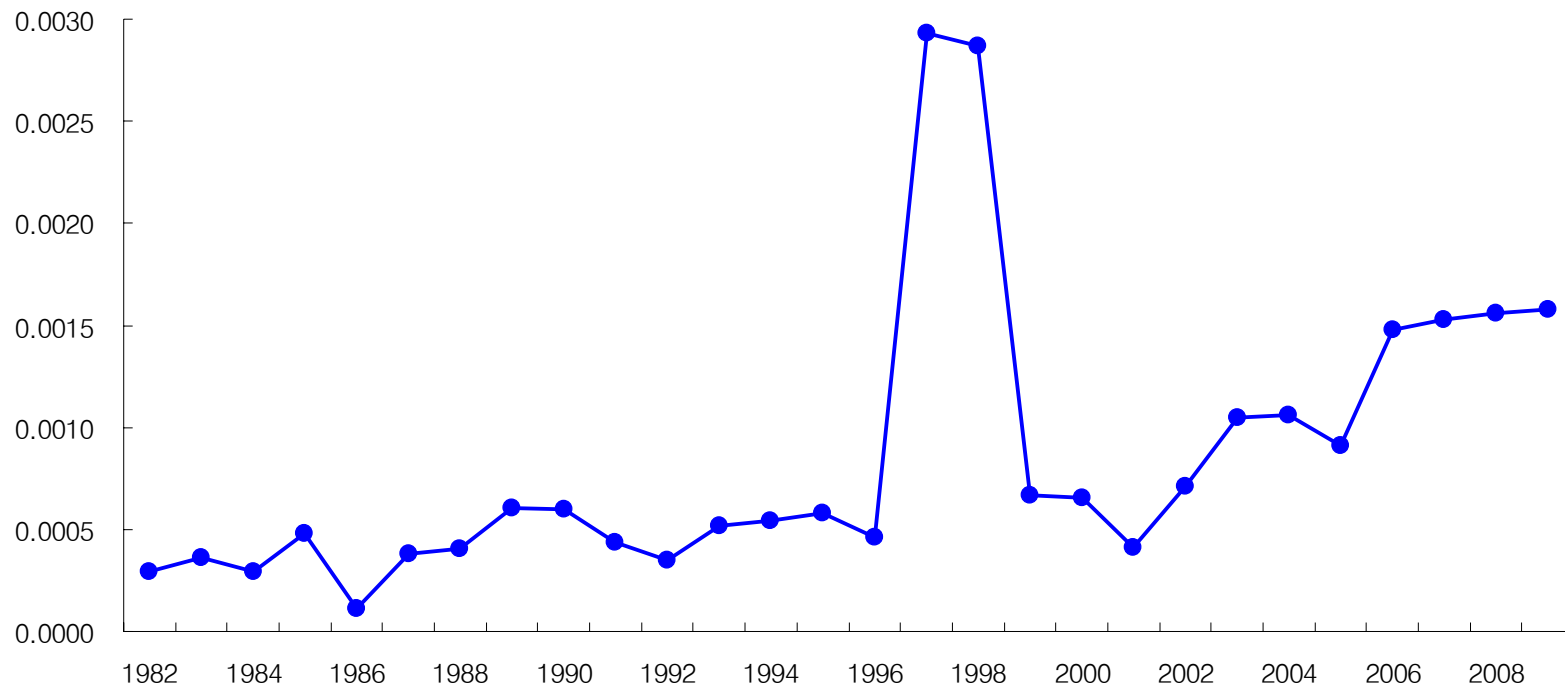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다. 소득불평등 구조의 특징: 실업률과 지니계수

- 무직가구비 증가의 소득불평등도(지니) 악화 기여도는 시계열적으로 완만하게 증가 (경제위기 기간 제외)

[그림 13] 무직가구비 1%p당 연도별 지니계수 변화 기여도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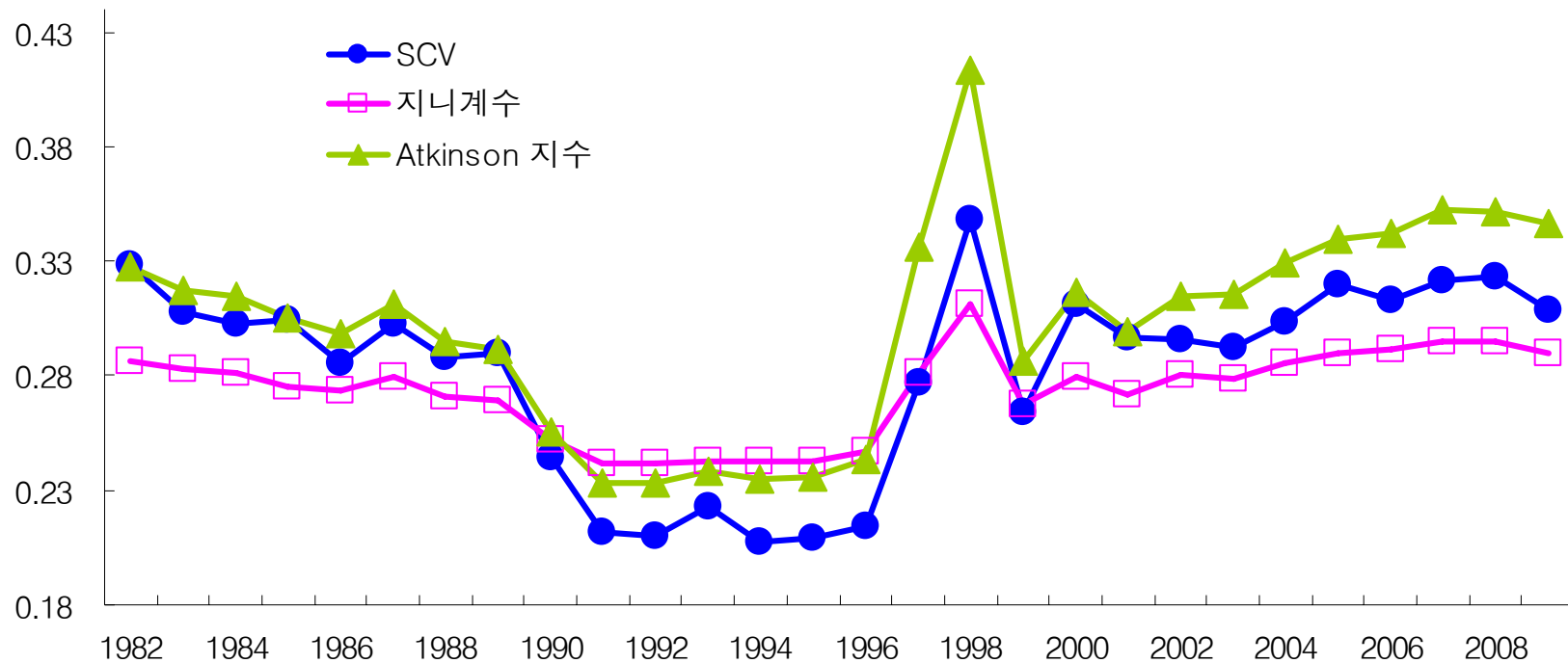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라.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 지니계수, Atkinson지수, 변이제공계수(SCV) 등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절대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 질적 측면에서 볼 때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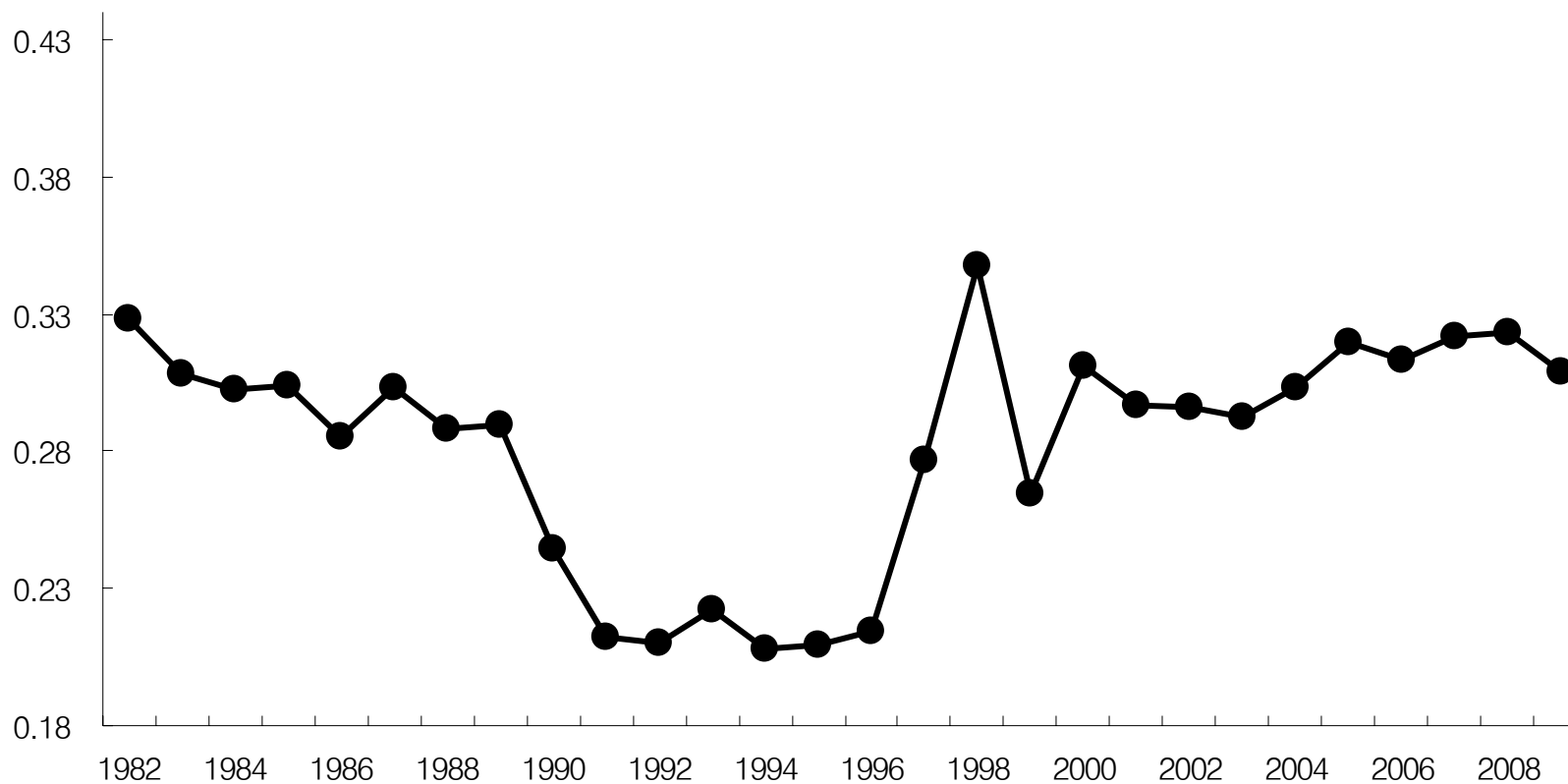
[그림 14] 주요 소득불평등도 지수의 변화추이(1982~2009,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라.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그림 15] 변이제공계수(SCV)의 변화추이 (1982~2009,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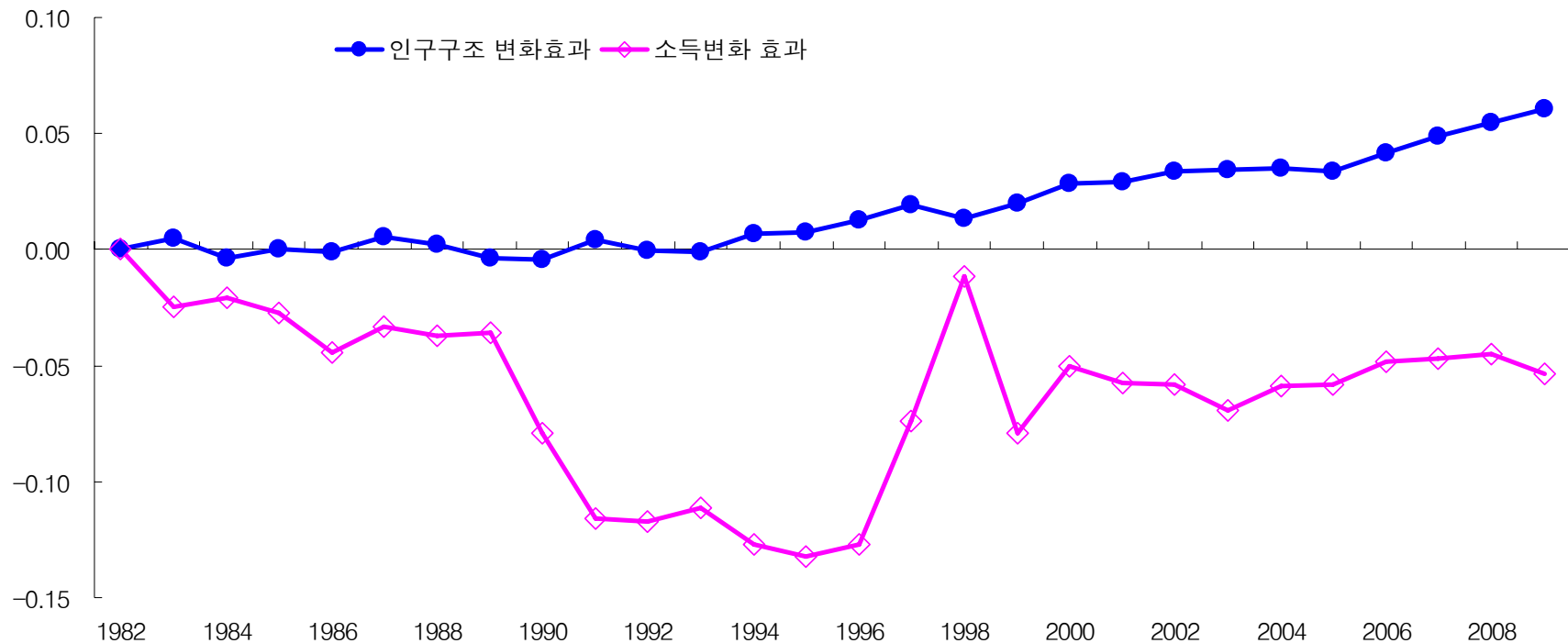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라.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 지수의 분해가 용이한 SCV를 사용하여 1982~2009년의 소득불평등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

○ 1982년을 기점으로 SCV 변화분을 누적하여 인구구조 요인과 기타 요인(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그림 16] 1982년 변이자승계수(SCV) 대비 누적 절대변화효과 분해 (1982~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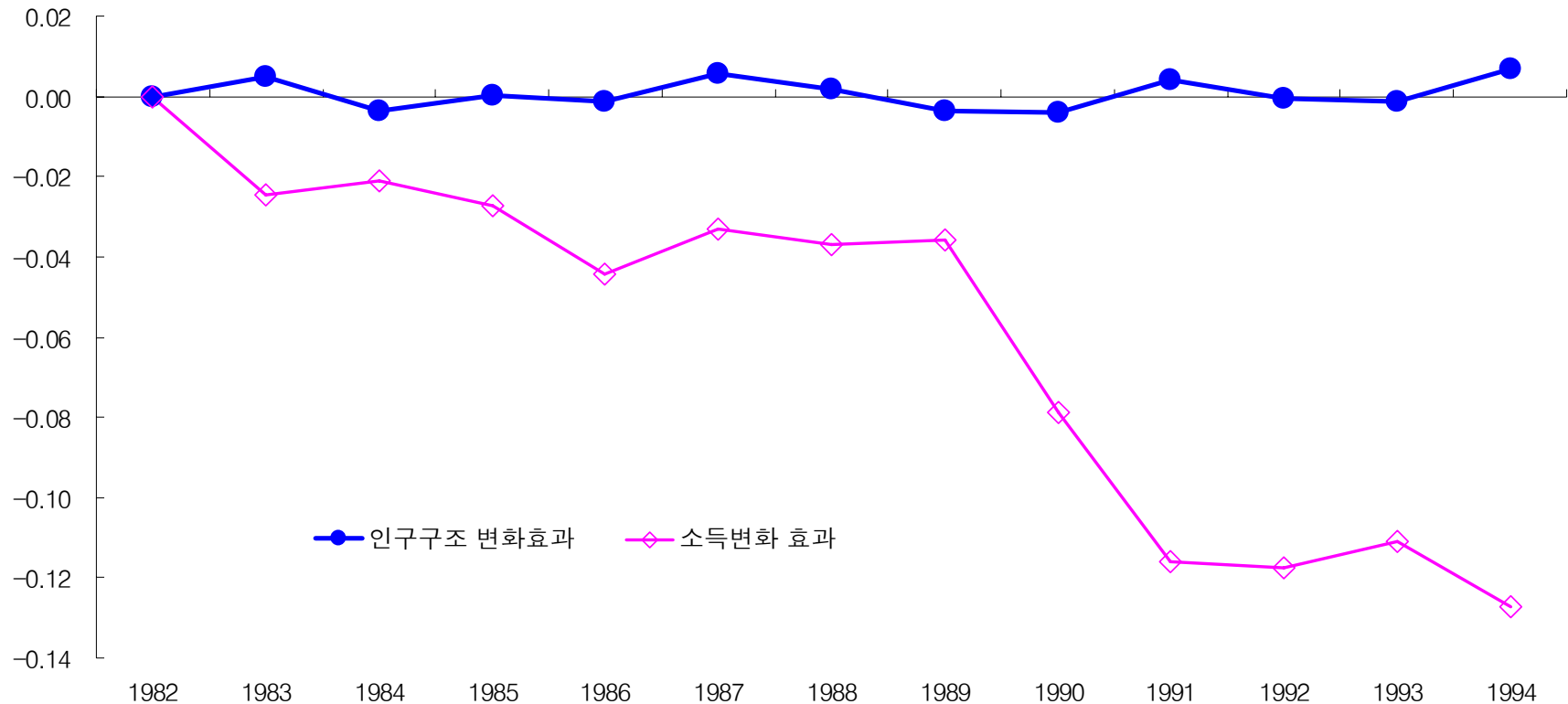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라.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 1982~1994년의 경우에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SCV 변화효과는 거의 0
-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소득불평등이 결정

[그림 17] 1982년 변이자승계수(SCV) 대비 누적 절대변화효과 분해 (1982~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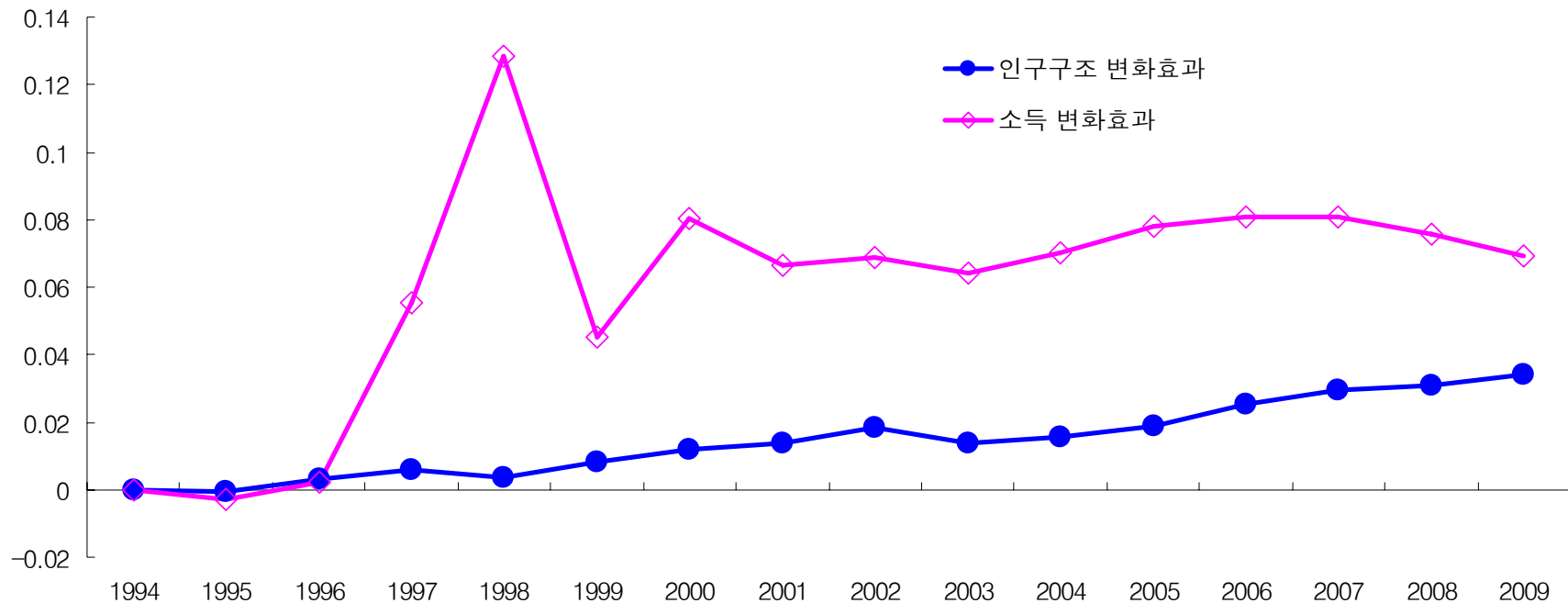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라.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 1994~2009년의 경우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한 변화폭이 크나 인구구조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소득불평등을 빠르게 확대시키기 시작
 -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 등의 효과는 안정화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에 의한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

[그림 18] 1994년 변이자승계수(SCV) 대비 누적 절대변화효과 분해 (1994~2009)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라.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 1980~1990년대 중반: 경제구조 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를 대부분 결정
 - 1990년대말부터 인구의 고령화 효과가 가시화
- 1990년대 중반~최근: 경제구조 등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안정화되는 반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분배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시작
 - 통계청 예측결과 향후 2050년까지도 노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따라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소득불평등 확대는 향후 계속될 전망
 - 성명재·박기백(2009)의 전망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2050년의 SCV는 2008년 대비 27.5% 악화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미래의 소득불평등 대응 정책방향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더라도 노인대책 위주의 재분배 정책이 필수적
 - 아울러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유도 등도 필수적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라.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표 5〉 인구구조와 소득분포 변화시 변이제공계수의 변화 기여도(비중)
(단위: %)

	1982~1994			1994~2008	
	인구구조 변화	소득효과		인구구조 변화	소득변화
1983	-23.8	123.8	1995	13.1	86.9
1984	14.3	85.7	1996	57.6	42.4
1985	-0.6	100.6	1997	9.9	90.1
1986	2.6	97.4	1998	2.6	97.4
1987	-21.1	121.1	1999	15.4	84.6
1988	-5.6	105.6	2000	12.8	87.2
1989	8.9	91.1	2001	17.4	82.6
1990	4.9	95.1	2002	21.0	79.0
1991	-3.6	103.6	2003	17.8	82.2
1992	0.4	99.6	2004	18.3	81.7
1993	1.0	99	2005	19.6	80.4
1994	-5.7	105.7	2006	23.7	76.3
			2007	26.8	73.2
			2008	29.0	71.0
연평균	-2.4	102.4	연평균	20.4	79.6

자료: 성명재·박기백 (2009)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라.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표 6〉 인구구조 변화시 변이제공계수(SCV)의 향후 전망 (성명재·박기백 2009)

(단위: %)

연도	SCV	2008년 대비 누적 변화율	연도	SCV	2008년 대비 누적 변화율
2008	0.32291	-	2029	0.37305	15.5
2009	0.32530	0.7	2030	0.37504	16.1
2010	0.32767	1.5	2031	0.37775	17.0
2011	0.33006	2.2	2032	0.38047	17.8
2012	0.33245	3.0	2033	0.38320	18.7
2013	0.33484	3.7	2034	0.38594	19.5
2014	0.33724	4.4	2035	0.38869	20.4
2015	0.33965	5.2	2036	0.39022	20.8
2016	0.34210	5.9	2037	0.39175	21.3
2017	0.34455	6.7	2038	0.39326	21.8
2018	0.34701	7.5	2039	0.39477	22.3
2019	0.34948	8.2	2040	0.39628	22.7
2020	0.35195	9.0	2041	0.39749	23.1
2021	0.35455	9.8	2042	0.39870	23.5
2022	0.35716	10.6	2043	0.39991	23.8
2023	0.35977	11.4	2044	0.40113	24.2
2024	0.36240	12.2	2045	0.40234	24.6
2025	0.36504	13.0	2046	0.40422	25.2
2026	0.36705	13.7	2047	0.40612	25.8
2027	0.36906	14.3	2048	0.40802	26.4
2028	0.37106	14.9	2049	0.40993	26.9
			2050	0.41185	27.5

자료: 성명재·박기백 (2009)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마. 근로자가구 vs. 전가구 지니계수 (대상가구의 범위 변화에 의한 지니계수의 오류)

- 근로자가구는 시계열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지닌 동일 집단이 아님.
 - 근로자가구는 해당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한 가구를 대상
 - 실직시 근로자가구에서 제외
 - 무직상태에서 벗어나 취업하면 새로이 근로자가구에 편입
- 그러므로 시계열적으로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불평등 지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특히 경기급변시 실제와 정반대의 정보를 제공
 - 경기급락시 평균소득이 감소하면서 전가구의 상대소득격차가 확대되지만 저층의 근로자 대량 탈락(실직)시 근로자가구의 상대격차는 오히려 축소
 - 경기급회복시 평균소득이 증가하면서 전가구의 상대소득격차가 축소되지만 저층의 근로자가 대량 취업시 근로자가구의 상대격차는 오히려 확대

- 예: 1998~1999년 지니계수

	1998년	1999년
실업률	7.0%	→ 6.3% (0.7%p↓)
근로자(통계청, 구계열)	0.3157	→ 0.3204 (0.0047p↑)
근로자(취업자, 필자)	0.25163	→ 0.25700 (0.00537p↑)
근로자(무직 포함, 필자)	0.33777	→ 0.27731 (0.06046p↓)
전가구(필자)	0.31121	→ 0.26726 (0.04395p↓)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마. 근로자가구 vs. 전가구 지니계수

〈표 7〉 가구유형별 지니계수 추이

	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업자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지니(근로자)
		무직+취업(A+B)	완전무직(A)	취업근로자(B)				
1982	0.28678	0.28444	0.30699	0.27920	0.28937	4.4	58.6	-
1983	0.28270	0.28463	0.29913	0.27879	0.27512	4.1	57.7	-
1984	0.28109	0.28539	0.28661	0.28276	0.26641	3.8	55.8	-
1985	0.27563	0.28258	0.31663	0.27683	0.25639	4.0	56.6	-
1986	0.27368	0.27732	0.28011	0.27678	0.26253	3.8	57.1	-
1987	0.27986	0.27383	0.29481	0.27181	0.28886	3.1	58.3	-
1988	0.27082	0.27034	0.31291	0.26569	0.26583	2.5	58.5	-
1989	0.26957	0.27185	0.34009	0.26503	0.26058	2.6	59.6	0.3039
1990	0.25236	0.25693	0.29452	0.24819	0.23780	2.4	60.0	0.2948
1991	0.24189	0.24609	0.29475	0.24042	0.22973	2.3	60.6	0.2869
1992	0.24147	0.24379	0.26381	0.23900	0.23529	2.4	60.9	0.2836
1993	0.24242	0.24698	0.28771	0.23922	0.22883	2.8	61.1	0.2817
1994	0.24293	0.24869	0.27579	0.23947	0.22901	2.4	61.7	0.2845
1995	0.24280	0.24674	0.29092	0.23579	0.23308	2.1	61.9	0.2837
1996	0.24685	0.25258	0.27787	0.24448	0.23473	2.0	62.0	0.2907
1997	0.28102	0.29621	0.31310	0.24209	0.24737	2.6	62.2	0.283
1998	0.31121	0.33777	0.27659	0.25163	0.25824	7.0	60.7	0.3157
1999	0.26726	0.27731	0.29403	0.25700	0.24630	6.3	60.5	0.3204
2000	0.27988	0.28718	0.31084	0.26878	0.26323	4.4	61.0	0.317
2001	0.27222	0.28288	0.29012	0.27276	0.25156	4.0	61.3	0.319
2002	0.27997	0.28733	0.31623	0.26991	0.26314	3.3	61.9	0.312
2003	0.27893	0.28996	0.33490	0.26610	0.25291	3.6	61.4	0.306
2004	0.28529	0.29512	0.35059	0.26924	0.25848	3.7	61.4	0.294
2005	0.28959	0.29543	0.32338	0.27489	0.27021	3.7	62.0	0.299
2006	0.29126	0.29852	0.32394	0.27451	0.27208	3.5	61.9	0.305
2007	0.29499	0.30360	0.34569	0.27703	0.27212	3.2	61.8	0.316
2008	0.29466	0.30401	0.33207	0.27683	0.26768	3.2	61.5	0.319
2009	0.28742	0.29833	0.29752	0.27303	0.25815	3.6	60.8	0.319

주: 1. 무직가구는 각년도의 4개 분기 모두 무직인 경우, 취업가구는 1개 분기 취업한 가구로 정의

2. 통계청 지니계수는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이며, 각 분기별 소득분위의 소득을 분위별로 합산하여 연가소득분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추정된 것임. 단, 2004~2009년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연소득을 토대로 추정된 것임.

3.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바. 시사점 및 정책대응방향

-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분배격차 확대 요인 종합
 - 경제위기 기간: 실업·실직 등 저소득층의 몰락이 주요 요인
 - 2000년 이후: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소득층의 빠른 소득 증가
- 경제위기 대응형 대응방향
 - 단기정책: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지지정책이 필요
 - 중·장기정책: 교육·재활훈련 등을 통한 근본적 생활지지정책이 필요
- 경제패러다임 변화 대응형 대응방향
 - 기업가정신, 혁신, 생산성 증대, 정보화 무장 등 총체적 경쟁력 강화 필요
 - 장기적으로 경제의 동학적 발전과 그를 통한 분배구조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준비 필요
 - 일차원적인 지니계수 축소를 위한 정책보다는 장기적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긴요
-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Childcare 및 아동빈곤 방지정책 등 고령자(노약자), 실업자, 여성가구주(또는 편모가구)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전개
 - OECD: 소득불평등 지수(예: 지니계수) 자체를 소득분배 정책의 정책타겟으로 하지 않음.
 - 빈곤정책이 소득분배 정책의 주요 핵심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가. 개요

- 소득세 개편시 효과의 종류
 - 세수(실효세부담률)
 - 과세자 비율
 - 세부담의 누진도
 - 소득재분배 효과
 - 노동공급 효과 등 (기초 연구 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

- 기본목적: 소득세 누진과세의 효과 분석
 - 세부담의 누진도 vs 소득재분배 효과
 - 소득재분배 효과 = 세수1원당 평균 재분배 효과 X 세수 (항등식)
 - 우변의 두 항 중 하나 이상 外生的으로 결정되는 경우 항등식은 방정식으로 변환
 - 세수1원당 평균 재분배 효과: 일반적으로 세부담 누진도와 정(+)의 상관관계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가. 개요

□ 소득재분배 효과

○ 공식 $TE = \frac{TE}{R} \times R = AE \times R$

TE: 소득재분배 총효과

AE: 세수 1원당 평균효과

R : 세수

○ 차분시 $\Delta TE = \Delta AE \cdot R + AE \cdot \Delta R$

□ 일반적으로 ΔAE 와 ΔR 의 부호가 반대이므로 소득재분배 효과(ΔTE)의 증감은 $\Delta AE \cdot R$ 와 $AE \cdot \Delta R$ 의 절대값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

○ 예외: 최고한계세율의 비례적 인상 등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나.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구조의 특징

- 소득세 부담의 누진성 발생 요인
 - 소득공제: 단일비례세율 하에서도 소득공제 허용시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변화
 - 누진세율체계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관련 기존 연구
 - 김태성(1996), 현진권(1999,2001), 전영준(2002), 성명재(2002), 안종범·임병인(2002), 전병목(2005) 등
-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상당히 크지만(급격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은 대체로 작다는 것이 중론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나.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구조의 특징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가 작은 편

○ 한국(09)	미국(05)	일본(05)	영국(05-06)	뉴질랜드(04)	캐나다 (01)
○ 3.2%	6.5%	3.2%	8.1%	5.4%	10.9%

- 그중 한 요인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수규모가 작기 때문**

-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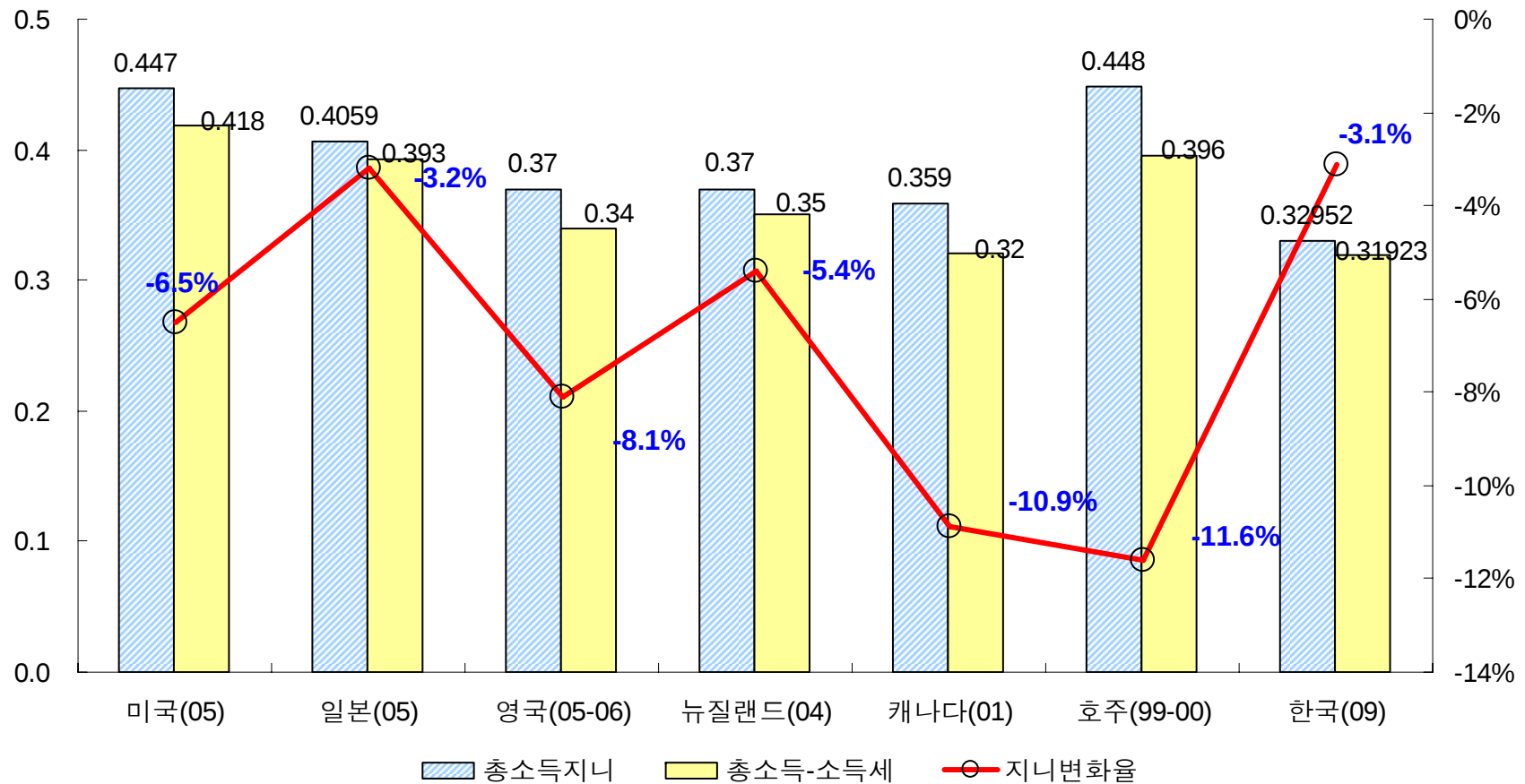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15.0%	37.9%	22.6%	29.9%	41.9%	37.3%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나.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구조의 특징

[그림 19]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비교 (지니계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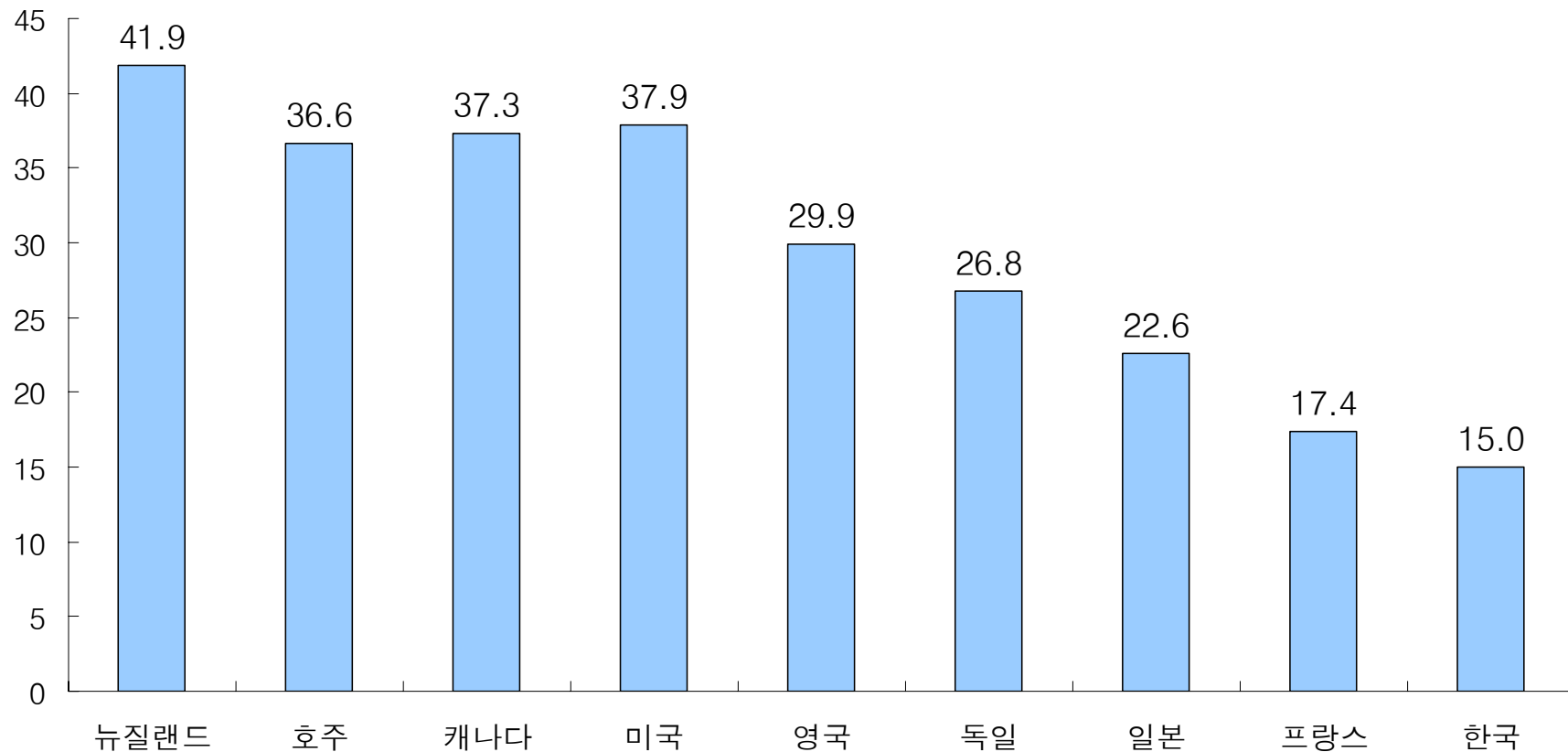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나.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구조의 특징

[그림 20] 개인소득세의 총조세수입 대비 비율의 국제비교(2008년 기준)

(단위: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나.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구조의 특징

〈표 8〉 개인소득세의 총조세수입 대비 비율의 국제비교(2008년 기준)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39.1	37.8	37.1	35.8	41.9	37.8	35.3	34.2	35.1	36.5	38.1	37.9
호주	44.0	45.2	43.0	40.6	37.8	38.4	38.5	40.2	39.8	37.4	36.7	36.6
일본	24.3	24.7	27.8	22.4	21.1	18.4	17.5	17.8	18.3	18.5	19.6	32.6
한국	11.5	13.4	21.1	19.2	14.6	12.8	12.7	13.6	13.3	15.2	16.7	15.0
프랑스	11.6	11.5	10.7	11.4	18.0	17.3	17.5	17.0	17.3	17.5	17.1	17.4
독일	29.6	28.7	27.6	27.5	25.3	25.1	23.9	22.8	23.3	24.5	25.1	26.8
영국	29.4	26.0	29.3	28.7	29.3	29.8	28.7	28.6	28.6	28.6	30.1	29.9
뉴질랜드	61.6	60.5	48.0	45.0	43.1	43.1	41.9	41.0	41.1	40.7	42.1	41.9
캐나다	34.1	35.2	40.8	37.5	36.8	35.3	34.6	35.0	35.6	36.3	37.4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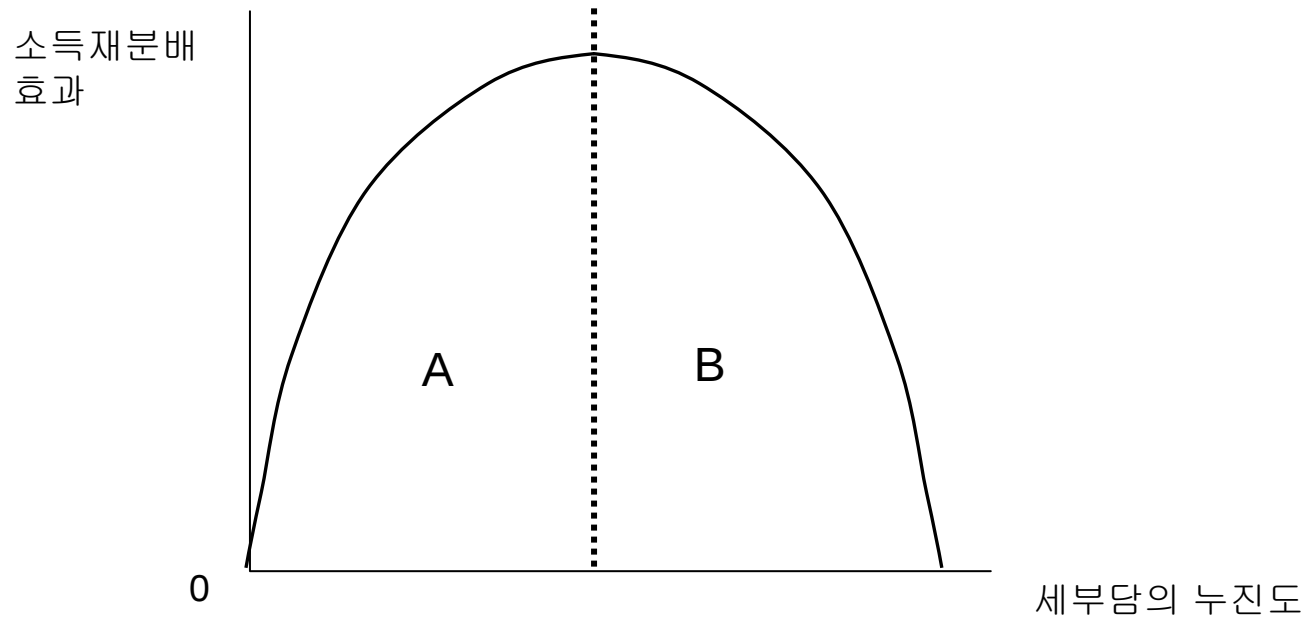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다.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역U자
-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B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

[그림 21]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현황

- 종합소득세: 2009년 과세인원 498.0만명중 357.0만명이 확정신고
 - 결정세액은 11.7조원
 - 과세인원 1인당 세부담: 235.4만원
 - 확정신고인원 1인당 세부담: 327.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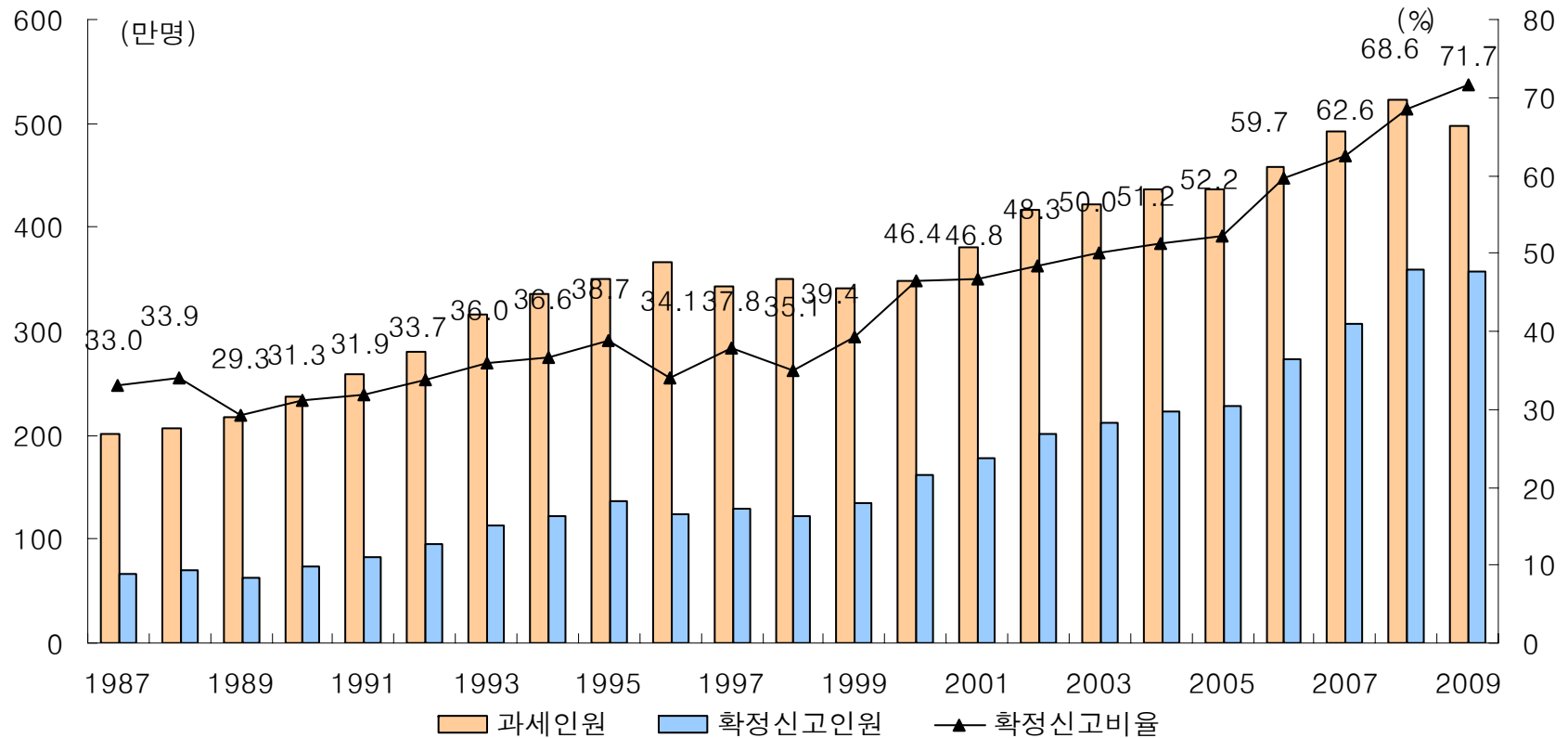
- 과세자 비율: 1987년 33.0%에서 2009년 71.7%로 크게 상승
 - 사업소득세 소득공제 수준 동결,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등에 기인

- 특히 2009년의 전년 대비 세수증가율은 -0.3%, 과세자 비율은 대폭 상승(3.1%p: 68.6% → 71.7%)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현황

[그림 2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비율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현황

- 근로소득세: 2009년 납세의무자 1,429.5만명중 854.1만명이 과세자
 - 결정세액은 12.9조원
 - 납세의무자 1인당 평균 세부담: 89.9만원
 - 과세인원 1인당 평균 세부담: 150.5만원

- 과세자 비율: 1995년 68.8%에서 2005년 51.3%로 대폭 하락후 2009년 59.8%로 상승
 - 과세자비율의 하락은 지속적·대폭적인 소득공제 확대에 기인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현황

〈표 9〉 근로소득세 과세인원과 결정세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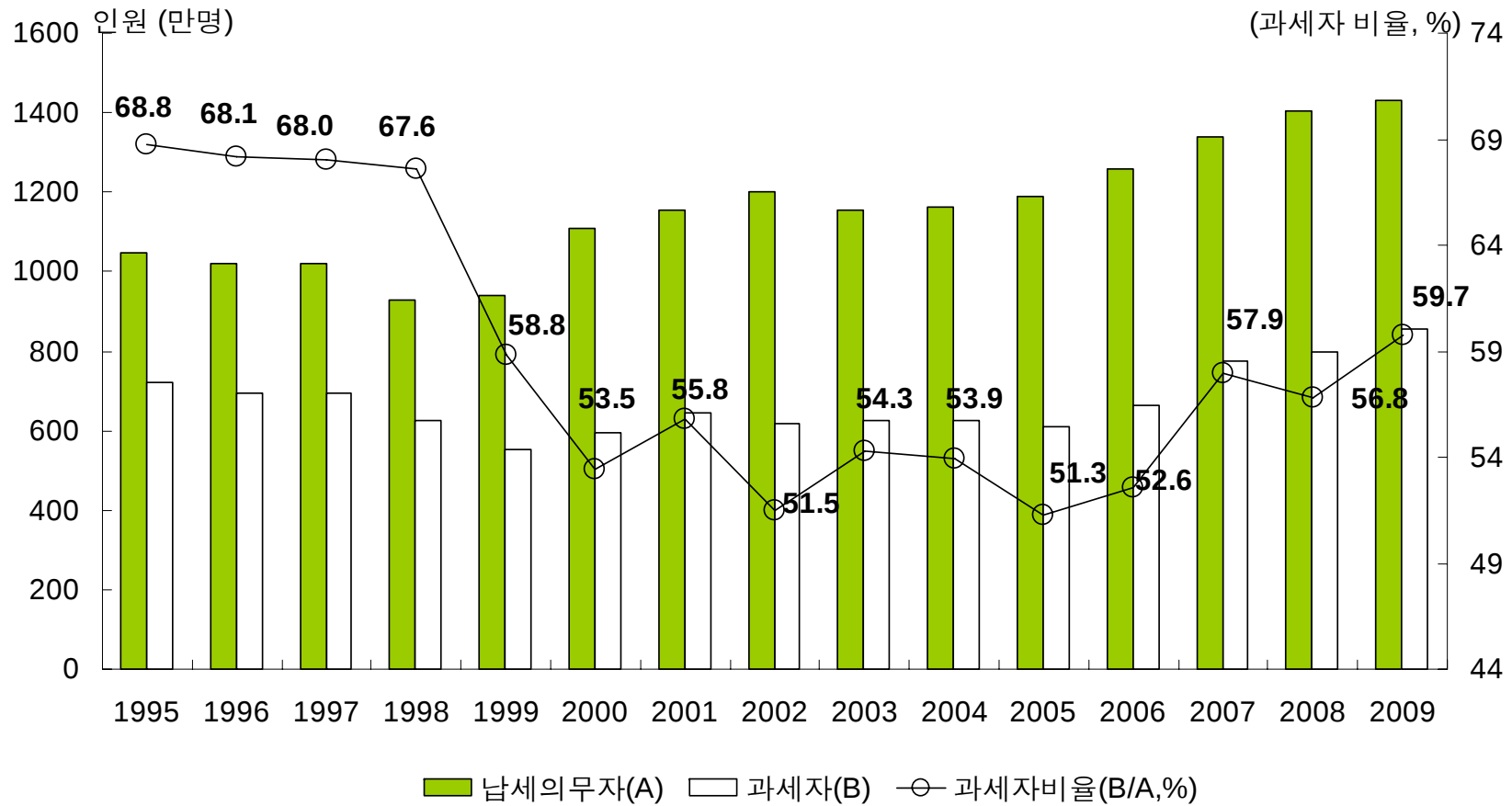
	납세의무자(A)	과세자(B)	결정세액(C)	C/A	C/B	B/A
	만명	만명	억원	만원	만원	%
1995	1,046.70	719.8	51,162.58	48.9	71.1	68.77
1996	1,021.20	695.8	48,360.16	47.4	69.5	68.14
1997	1,021.20	694.4	50,105.97	49.1	72.2	68.00
1998	927.6	626.9	43,471.55	46.9	69.3	67.58
1999	939.0	552.0	43,372.14	46.2	78.6	58.79
2000	1,110.20	593.4	60,770.19	54.7	102.4	53.45
2001	1,155.50	644.6	71,460.91	61.8	110.9	55.79
2002	1,201.70	618.7	69,334.22	57.7	112.1	51.49
2003	1,154.70	626.8	76,411.85	66.2	121.9	54.28
2004	1,162.40	626.8	89,131.07	76.7	142.2	53.92
2005	1,190.30	610.7	97,782.03	82.1	160.1	51.30
2006	1,259.50	662.1	115,663.78	91.8	174.7	52.57
2007	1,337.60	774.9	141,137.96	105.5	182.1	57.93
2008	1,404.60	798.1	141,821.45	101.0	177.7	56.82
2009	1,429.50	854.1	128,518.57	89.9	150.5	59.75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현황

[그림 23]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 변화추이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현황

-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2.5%가 전체 세수의 91.7% 부담 (2007년)**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그림 21]의 B영역에 위치 추정 (지나친 누진도·낮은 재분배 효과)

〈표 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 (2007년귀속)

(단위: 명, 백만원, %)

	신고인원 (납세인원 대비 누적비, %)		소득금액		결정세액	
				구성비		구성비
전체	3,074,419	(62.6%)	77,124,123	100%	11,277,513	100%
상위 10%	307,441	(6.3%)	44,087,065	57.2% (57.2%)	9,296,673	82.4% (82.4%)
10 ~ 20%	307,442	(12.5%)	11,595,513	15.0% (72.2%)	1,046,853	9.3% (91.7%)
20 ~ 30%	307,442	(18.8%)	6,654,706	8.6% (80.8%)	424,893	3.8% (95.5%)
30 ~ 40%	307,442	(25.0%)	4,485,027	5.8% (86.6%)	205,825	1.8% (97.3%)
40 ~ 50%	307,442	(31.3%)	3,282,225	4.3% (90.9%)	120,777	1.1% (98.4%)
50 ~ 60%	307,442	(37.5%)	2,489,493	3.2% (94.1%)	78,312	0.7% (99.1%)
60 ~ 70%	307,442	(43.8%)	1,893,550	2.5% (96.6%)	51,090	0.5% (99.6%)
70 ~ 80%	307,442	(50.1%)	1,405,977	1.8% (98.4%)	32,644	0.3% (99.9%)
80 ~ 90%	307,442	(56.3%)	949,813	1.2% (99.6%)	16,091	0.1% (99.99%)
90 ~ 100%	307,442	(62.6%)	280,754	0.4% (100%)	4,355	0.0% (100%)

주: 1. 2007년의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4,913,387명임.

2. () 안은 총납세인원 대비 누적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현황

-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3.7%가 전체 세수의 92.4% 부담 (2008년)**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그림 21]의 B영역에 위치 추정 (지나친 누진도·낮은 재분배 효과)

〈표 10-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 (2008년귀속)

(단위: 명, 백만원, %)

	신고인원 (납세인원 대비 누적비, %)		소득금액		결정세액	
				구성비		구성비
전체	3,584,432	(68.6%)	85,082,505	100%	11,729,805	100%
상위 10%	358,443	(6.86%)	49,038,026	57.6% (57.6%)	9,831,416	83.8% (83.8%)
10 ~ 20%	358,443	(13.71%)	12,766,826	15.0% (72.6%)	1,012,137	8.6% (92.4%)
20 ~ 30%	358,443	(20.57%)	7,312,914	8.6% (81.2%)	391,515	3.3% (95.8%)
30 ~ 40%	358,443	(27.43%)	4,923,111	5.8% (87.0%)	196,909	1.7% (97.5%)
40 ~ 50%	358,443	(34.29%)	3,573,975	4.2% (91.2%)	121,191	1.0% (98.5%)
50 ~ 60%	358,443	(41.14%)	2,689,273	3.2% (94.4%)	78,099	0.7% (99.2%)
60 ~ 70%	358,443	(48.00%)	2,028,298	2.4% (96.8%)	50,690	0.4% (99.6%)
70 ~ 80%	358,443	(54.86%)	1,490,343	1.8% (98.5%)	31,266	0.3% (99.8%)
80 ~ 90%	358,444	(61.71%)	997,016	1.2% (99.7%)	13,262	0.1% (99.99%)
90 ~ 100%	358,444	(68.57%)	262,723	0.3% (100%)	3,320	0.0% (100%)

주: 1. 2008년의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5,227,276명임.

2. () 안은 총납세인원 대비 누적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현황

-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4.3%가 전체 세수의 93.6% 부담 (2009년)**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그림 21]의 B영역에 위치 추정 (지나친 누진도·낮은 재분배 효과)

〈표 1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 (2009년귀속)

(단위: 명, 백만원, %)

	신고인원 (납세인원 대비 누적비, %)		소득금액		결정세액	
				구성비		구성비
전체	3,570,816	(71.71%)	90,225,673	100%	11,699,258	100%
상위 10%	357,081	(7.17%)	50,650,553	56.1% (56.1%)	10,002,595	85.5% (85.5%)
10 ~ 20%	357,081	(14.34%)	13,769,783	15.3% (71.4%)	952,579	8.1% (93.6%)
20 ~ 30%	357,081	(21.51%)	8,077,939	9.0% (80.4%)	360,302	3.1% (96.7%)
30 ~ 40%	357,081	(28.68%)	5,455,793	6.0% (86.4%)	160,756	1.4% (98.1%)
40 ~ 50%	357,082	(35.85%)	3,958,677	4.4% (90.8%)	92,987	0.8% (98.9%)
50 ~ 60%	357,082	(43.03%)	2,984,538	3.3% (94.1%)	59,135	0.5% (99.4%)
60 ~ 70%	357,082	(50.20%)	2,254,612	2.5% (96.6%)	38,456	0.3% (99.7%)
70 ~ 80%	357,082	(57.37%)	1,653,859	1.8% (98.4%)	22,670	0.2% (99.9%)
80 ~ 90%	357,082	(64.54%)	1,119,240	1.2% (99.7%)	8,164	0.1% (99.99%)
90 ~ 100%	357,082	(71.71%)	300,679	0.3% (100%)	1,614	0.0% (100%)

주: 1. 2007년의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4,979,619명임.

2. () 안은 총납세인원 대비 누적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현황

□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1.6%가 전체결정세수의 80.1% 부담**

○ 상위 근로소득자 17.4%가 전체 세수의 89.4%를 부담

〈표 11〉 근로소득세 부담 분포 (2007년귀속)

(단위: 명, 백만원, %)

과세자중 비율	인원 (명)	비중 (%)	누적비 (%)	급여 계	결정세액(백만원)	비중 (%)	누적비중 (%)
0~10%	774,867	5.8	5.8	74,486,944	8,915,363	63.2	63.2
10~20%	774,867	5.8	11.6	44,852,763	2,387,230	16.9	80.1
20~30%	774,867	5.8	17.4	36,207,119	1,308,578	9.3	89.4
30~40%	774,867	5.8	23.2	30,365,817	674,760	4.8	94.1
40~50%	774,867	5.8	29.0	26,026,877	346,223	2.5	96.6
50~60%	774,867	5.8	34.8	22,389,900	212,304	1.5	98.1
60~70%	774,867	5.8	40.5	19,263,433	134,937	1.0	99.0
70~80%	774,867	5.8	46.3	16,505,973	81,285	0.6	99.6
80~90%	774,867	5.8	52.1	13,454,619	40,851	0.3	99.9
90~100%	774,867	5.8	57.9	11,383,266	12,265	0.1	100.0
과세자 계	7,748,670	57.9	57.9	294,936,711	14,113,796	100.0	100
면세자 계	5,627,584	42.1	100	-	-	0	-
전체	13,376,254	100	-	-	14,113,796	100	100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현황

□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1.4%가 전체결정세수의 81.2% 부담**

○ 상위 근로소득자 17.1%가 전체 세수의 90.1%를 부담

〈표 11-1〉 근로소득세 부담 분포 (2008년귀속)

(단위: 명, 백만원, %)

과세자중 비율	인원 (명)	인원비중 (%)	인원누적비 (%)	급여 계	결정세액 (백만원)	비중 (%)	누적비중 (%)
0~10%	798,100	5.68	5.68	79,462,410	9,087,746	64.08	64.08
10~20%	798,100	5.68	11.36	47,729,623	2,432,743	17.15	81.23
20~30%	798,100	5.68	17.05	38,284,086	1,251,443	8.82	90.06
30~40%	798,100	5.68	22.73	31,987,079	584,972	4.12	94.18
40~50%	798,100	5.68	28.41	27,274,069	338,196	2.38	96.57
50~60%	798,100	5.68	34.09	23,506,496	215,265	1.52	98.08
60~70%	798,100	5.68	39.78	20,314,951	136,627	0.96	99.05
70~80%	798,100	5.68	45.46	17,570,350	81,924	0.58	99.62
80~90%	798,100	5.68	51.14	14,222,421	41,088	0.29	99.91
90~100%	798,100	5.68	56.82	12,112,633	12,141	0.09	100
과세자 계	7,981,000	56.82	56.82	312,464,118	14,182,145	100	100
면세자 계	6,064,580	43.18	100	-	-	0	-
전체	14,045,580	100	-	-	14,182,145	100	100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근로·종합소득세 과세현황

□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2.0%가 전체결정세수의 84.7% 부담**

○ 상위 근로소득자 17.9%가 전체의 92.3% 부담

<표 11-2> 근로소득세 부담 분포 (2009년귀속)

(단위: 명, 백만원, %)

과세자중 비율	인원 (명)	비중 (%)	누적비 (%)	급여 계	결정세액 (백만원)	비중 (%)	누적비중 (%)
0~10%	854,117	5.97	5.97	83,514,568	8,755,316	68.12	68.12
10~20%	854,117	5.97	11.95	50,065,303	2,134,418	16.61	84.73
20~30%	854,117	5.97	17.92	39,769,474	972,341	7.57	92.30
30~40%	854,117	5.97	23.90	33,096,621	408,846	3.18	95.48
40~50%	854,117	5.97	29.87	28,075,239	227,274	1.77	97.25
50~60%	854,117	5.97	35.85	24,079,821	151,919	1.18	98.43
60~70%	854,117	5.97	41.82	20,728,440	100,944	0.79	99.22
70~80%	854,117	5.97	47.80	17,108,323	59,650	0.46	99.68
80~90%	854,117	5.97	53.77	13,943,244	31,362	0.24	99.92
90~100%	854,115	5.97	59.75	12,049,383	9,786	0.08	100
과세자 계	8,541,168	59.75	59.75	322,430,416	12,851,856	100	100
면세자 계	5,753,825	40.25	100	-	-	0	-
전체	14,294,993	100	-	-	12,851,856	100	100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마. 소득재분배 효과

- 1995~2000년에 비해 최근 소득세의 누진도는 커졌으나 소득재분배 효과는 4.3%(1995년)에서 3.2%(2009년)로 축소

○	'95	'00	'03	'06	'09
지니계수(하락률)	-4.3%	-3.2%	-3.4%	-3.3%	-3.2%

- 근본 원인은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 하락과 그에 따른 세수감소(세수비중 하락) 등에 기인

- 반면에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상승(즉, KPS의 하락)

-	'95	'00	'03	'06	'08	'09
KPS지수	0.675	0.699	0.658	0.662	0.667	0.637

- 일반적으로 과세자 비율이 낮을수록 세부담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누진도가 커지는 경향

- 세수규모의 하락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감소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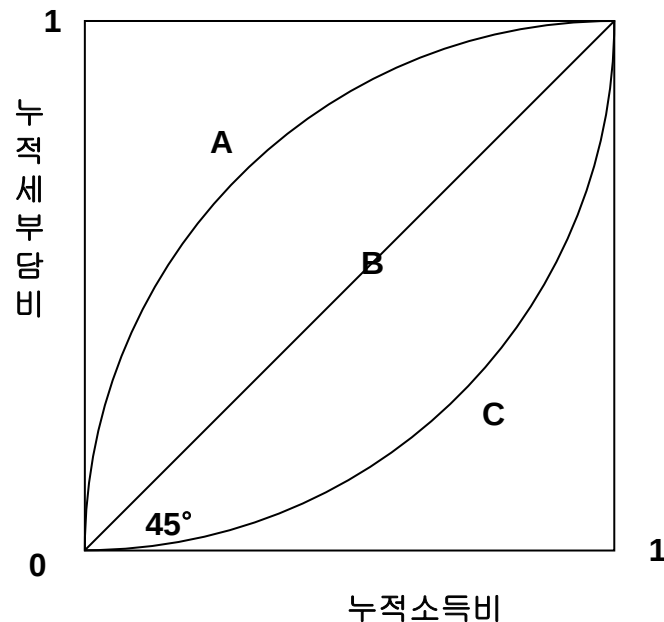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마. 소득재분배 효과

- KPS지수: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는 지수(0~2 사이)
 - **0**에 가까울수록 누진적, **2**에 가까울수록 역진적, **1**이면 비례적

$$KPS = \frac{\text{조세집중곡선 아래 도형의 면적}}{45^\circ \text{선 아래 도형의 면적}}$$

[그림 24] 조세집중곡선



- 조세집중곡선과 세부담의 누진도
 - **A** : 세부담 역진적 ($KPS > 1$)
 - **B** : 세부담 비례적(중립적, $KPS=1$)
 - **C** : 세부담 누진적 ($KPS < 1$)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마. 소득재분배 효과

〈표 12〉 소득세 KPS 지수 및 지니계수 추이

	총소득 지니계수(A)	총소득 - 소득세 지니계수(B)	$(B - A)/A$ (%)	KPS 지수
1995	0.24280	0.23238	-4.3	0.67461
1996	0.24685	0.23793	-3.6	0.68961
1997	0.28102	0.27175	-3.3	0.68157
1998	0.31121	0.30267	-2.7	0.68634
1999	0.26726	0.25881	-3.2	0.68305
2000	0.27988	0.27081	-3.2	0.69904
2001	0.27222	0.26196	-3.8	0.68832
2002	0.27997	0.27092	-3.2	0.68133
2003	0.28266	0.27313	-3.4	0.65781
2004	0.28886	0.27903	-3.4	0.66043
2005	0.29335	0.28311	-3.5	0.66122
2006	0.32975	0.31876	-3.3	0.66211
2007	0.33331	0.32153	-3.5	0.66980
2008	0.33971	0.32826	-3.4	0.66659
2009	0.32952	0.31923	-3.1	0.64037

주 : KPS 지수는 세금 1원당 평균적인 누진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바. 소득공제와 소득재분배 효과: 모의실험결과를 중심으로 (성명재, 2007)

- 모의실험을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의 근로소득소득공제·특별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공제 동결, 사업소득포착률 변화, 사업소득세에 특별공제 허용, 인적공제 조정시의 세부담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모의실험방법으로 추정 (성명재(2007),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제지원 효과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pp.295-336.)
- 소득공제(근로소득소득공제·특별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득세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누진도는 완화되지만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는 상승**
 - 다만 이들 공제를 모두 폐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감소추세로 반전
 - 소득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면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누진세율구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누진도의 대폭 약화로 인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
- 사업소득포착률이 상승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상승
 - 사업소득자들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과표양성화가 진전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대
- 시계열적으로 소득공제를 동결하면 실질적인 면세점 인하효과가 나타나면서 누진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실질세수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대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바. 소득공제와 소득재분배 효과: 모의실험결과를 중심으로 (성명재, 2007)

□ 소득공제의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소수자추가공제 등) 소득재분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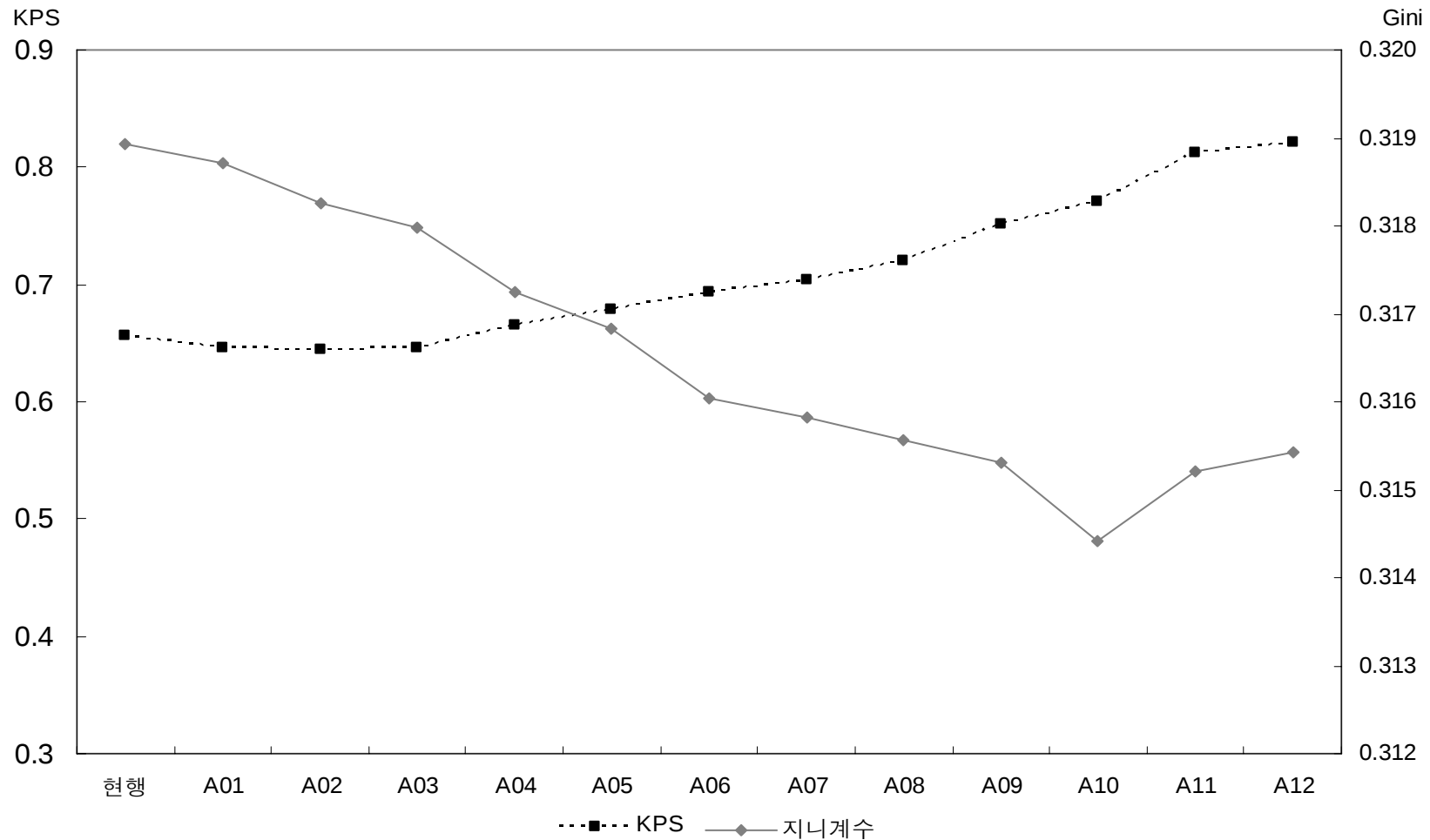
□ 소득공제 축소 모의실험 시나리오 (2007년 세법 기준)

- A01 : 4500만원 이상 근로소득공제 폐지
- A02 : 3000만원 이상 근로소득공제 폐지
- A03 : A02 + 1500~3000만원 공제율 15%에서 10%로
- A04 : A03 + 500~1500만원 공제율 50%에서 25%로
- A05 : A04 + 500~3000만원 공제율 50% 또는 15%에서 10%로
- A06 : 500만원 이상 근로소득공제 폐지 (500만원 이하 전액)
- A07 : 400만원 이상 근로소득공제 폐지 (400만원 이하 전액)
- A08 : 250만원 이상 근로소득공제 폐지 (250만원 이하 전액)
- A09 : 근로소득공제 폐지(=현행-근로소득공제)
- A10 : 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 폐지(=현행-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
- A11 : 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현행-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 A12 : 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소수자추가공제 폐지
(=현행-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소수자추가공제)
 - 소득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면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누진세율구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누진도의 대폭 약화로 인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바. 소득공제와 소득재분배 효과: 모의실험결과를 중심으로 (성명재, 2007)

[그림 25] 소득공제 축소시의 세부담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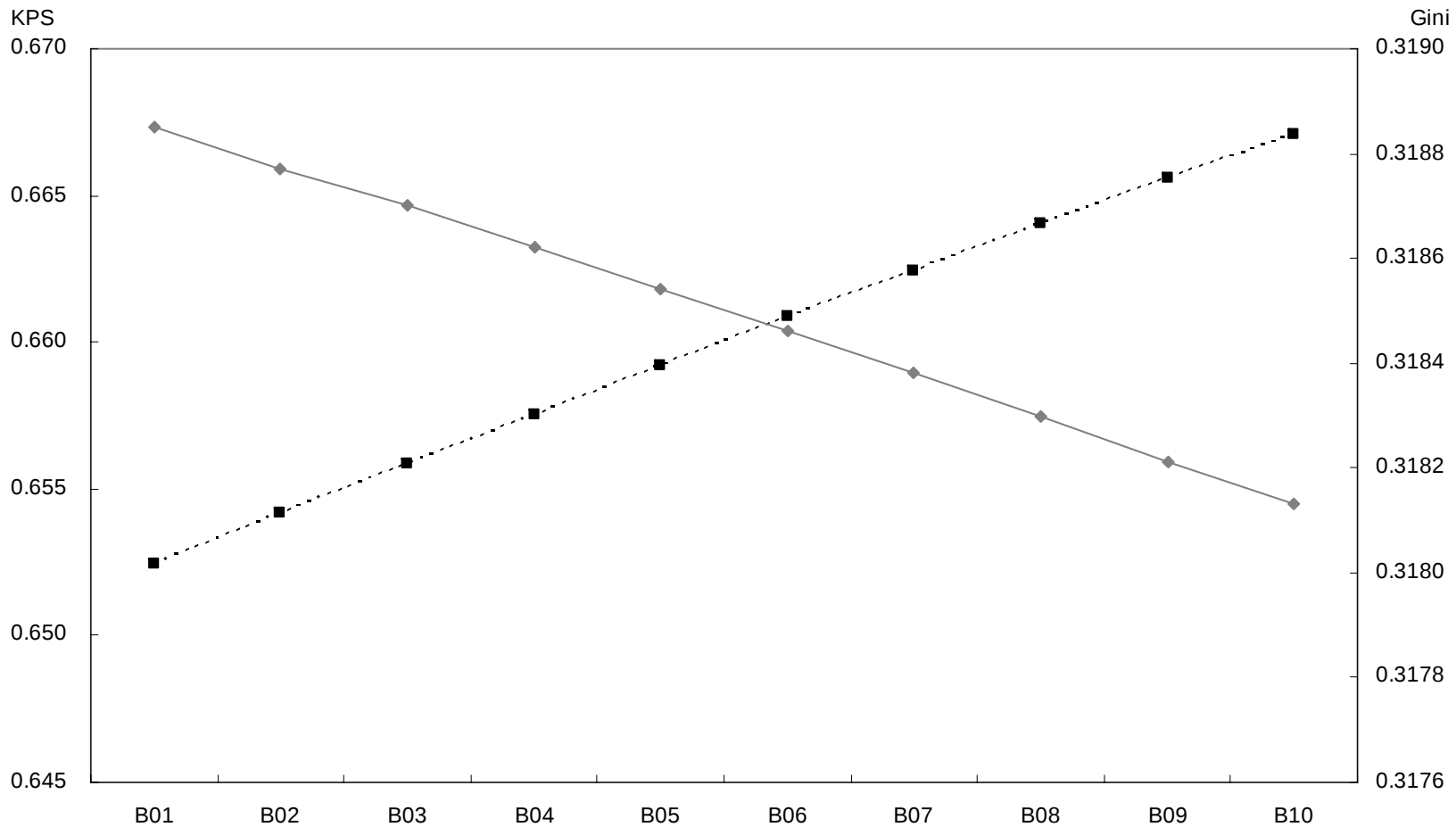


자료: 성명재 (2007)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바. 소득공제와 소득재분배 효과: 모의실험결과를 중심으로 (성명재, 2007)

[그림 26] 사업소득포착률 제고시의 세부담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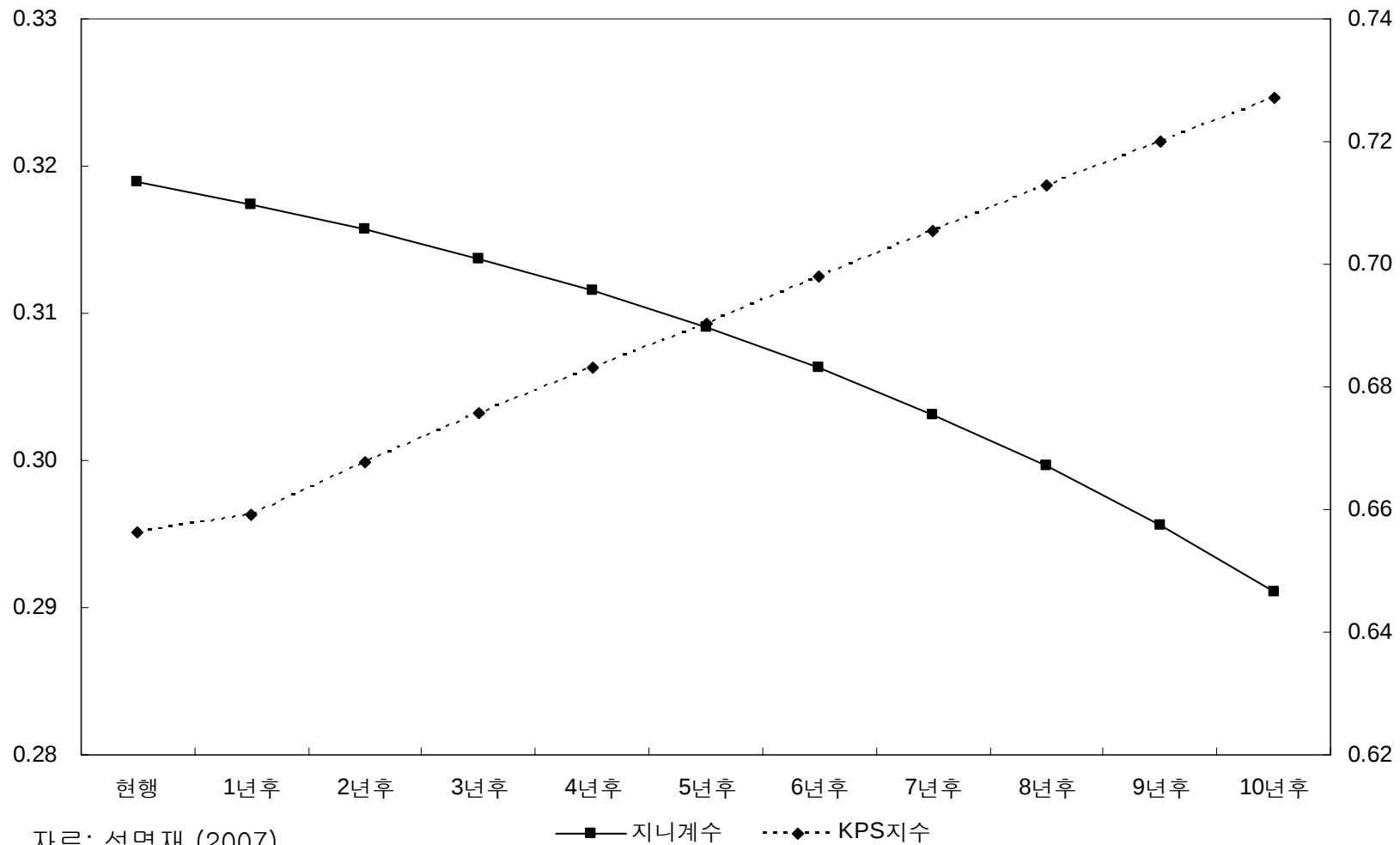
주: B01~B10은 사업소득포착률이 2006년 수준보다 각각 1~10%p씩 높아진 경우를 상정한 것임.

자료: 성명재 (2007)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바. 소득공제와 소득재분배 효과: 모의실험결과를 중심으로 (성명재, 2007)

[그림 27] 소득공제 동결시의 소득재분배 효과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바. 소득공제와 소득재분배 효과: 모의실험결과를 중심으로 (성명재, 2007)

- 사업소득세에 특별공제 확대적용시의 효과
 - 의료비공제 허용: 세수 1.21% 감소, 세후 지니계수: 0.31893 → 31899 (0.00006지니p 상승)
 - 6세 이하 자녀 유치원(보육시설) 교육비 공제 허용: 세수감소 0.15%로 미미, 지니계수 0.00001지니p 상승
 - 교육비 및 보험료공제 허용: 세수 각각 1.97%, 3.12% 감소
 - 세후 지니계수 각각 0.00011지니p와 0.00013지니p씩 소폭 상승
 - 공제를 확대해주지만 과세자 비율에는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표준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60만원 → 100만원): 세수 1.35% 감소, 지니계수 0.00001지니p 감소

- 그러므로 사업소득자에게도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을 허용해주더라도 다소간 세수가 감소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거의 차이가 없음.

- 기본인적공제의 상향조정: 누진도의 상승(KPS 대폭 하락, 0.651→0.599)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 (실효세율 3.49%→2.87%)로 인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축소
 - 모든 소득계층에서의 실효세부담률 하락 초래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 정책시사점

- 우리나라 소득세는 **세부담의 누진도는 높으나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은 편**
 -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추가적인 증세는 막대한 효율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에 소득수준이나 담세력에 비해 중소득층은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편
 - 따라서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 증대시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 예상: 이 경우 세부담의 누진도는 결과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 축소시 소기의 성과 기대 가능**
 - 사업소득포착률 제고, 소득공제 수준의 동결시 장기적으로 매우 큰 소득재분배 효과 기대 가능

-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소득공제의 축소가 어려운 만큼 소득공제의 직접적인 축소보다는 **소득공제 동결 또는 물가연동제 실시가 바람직**
 - 물가연동시에는 **실질소득 증가분만큼 소득공제의 동결효과**가 예상
 - 아울러 **사업소득포착률 제고** 노력의 배가 및 그에 따른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 정책시사점

- 소득공제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이 면세자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후소득 변화가 미미하여 세후소득 비중이 상승
 -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여 세후소득의 비중 하락
- 고소득층의 경우 세후소득 비중의 하락 정도는 소득공제의 축소범위에 따라 불규칙
 -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공제 하락에 의한 과표상승 및 한계세율 상승률이 구간에 따라 고소득층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
-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폐지시에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로 인해 야기되는 소득유형간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 악화 가능성 존재
- 그러므로 소득재분배 목적의 근로소득세 관련 소득공제 축소시에는 사업소득포착률 제고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 유지가 전제될 필요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가. 문제의 제기

- 1990년대 말 이후 상대소득격차의 급속한 확대 및 확대추세의 지속
 - 구조적 요인변화에 기인
 - 주요 원인
 - 산업구조 개편,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업 구조조정, 기술편향적 발전 등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
- 소득재분배에 대한 각계 요구 급증
 - 세제의 누진도 강화 요구 증대
 - ※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서로 다른 개념임에 유의할 필요
 -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 증대
 - ‘성장 우선’ vs ‘분배 우선’ 논쟁으로의 점화
- 조세·재정지출의 성과 및 형평성 분석을 위한 계층별 귀착 분석에 대한 요구 증대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가. 문제의 제기

- 소득재분배 효과의 이해
 - 조세·재정을 통한 정부활동의 결과로서 계층별 부담·수혜구조를 파악
 - 부담·수혜 총액 비교뿐만 아니라 계층별 부담구조도 정책 분석·결정에 필요
 - 흔히 이를 Tax-Benefit 효과분석이라고 지칭
-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잠재적) 정책수용가능성 검토
 - 소득계층별 수혜·부담 분포의 추계를 통한 가상적 정책조합에 대한 채택 가능성 분석
- 국제비교를 통한 재분배 정책방향의 전망 및 제언
 - 주요 선진국과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 비교
 - 선진국(영국)의 소득계층별 순수혜 분포와 비교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나. 부담·수혜의 추정

□ 포괄범위

- 부담: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 수혜: 현금급여(정부이전소득), 현물급여 중 사회분야 지출과 교육

□ 조세·재정지출의 추정

- 현금수혜(=공적연금+기타사회보장수혜):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정보 이용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기타사회보장수혜: 기초생보(현금), 실업급여 등
- 직접세
 - 소득세: 자료로부터 세부담을 impute
 -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소득세 정보는 매우 부정확
 - 특히 사업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을 나타내므로 시점이 불일치
 -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정보 이용
 - 법인세 등은 추정·배분이 곤란하여 제외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나. 부담·수혜의 추정

□ 조세·재정지출의 추정(계속)

- 간접세(소비세): 자료로부터 세목별 과세대상을 선별하여 세부담을 impute
 - 소비세의 종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 현물급여: 자료에서 수혜기준 총족가구 추정 및 집계자료 등으로부터 수혜가구 당 또는 수혜인원당 수혜액을 추정하여 배분
 - 사회지출 + 교육지출을 대상
 - 국민기초생보 (의료급여, 교육급여)
 - 국민건강보험
 - 교육(초·중·고·대학생)
 - 보육(저소득층, 시설)
 - 주택(구매, 전세, 임대, 국민주택 등)
 - 기타 일반공공행정, 국방 등은 분석에서 제외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나. 부담·수혜의 추정

〈표 13〉 국민부담·사회지출수혜의 소득계층별 금액 분포(2009년)

(단위: 천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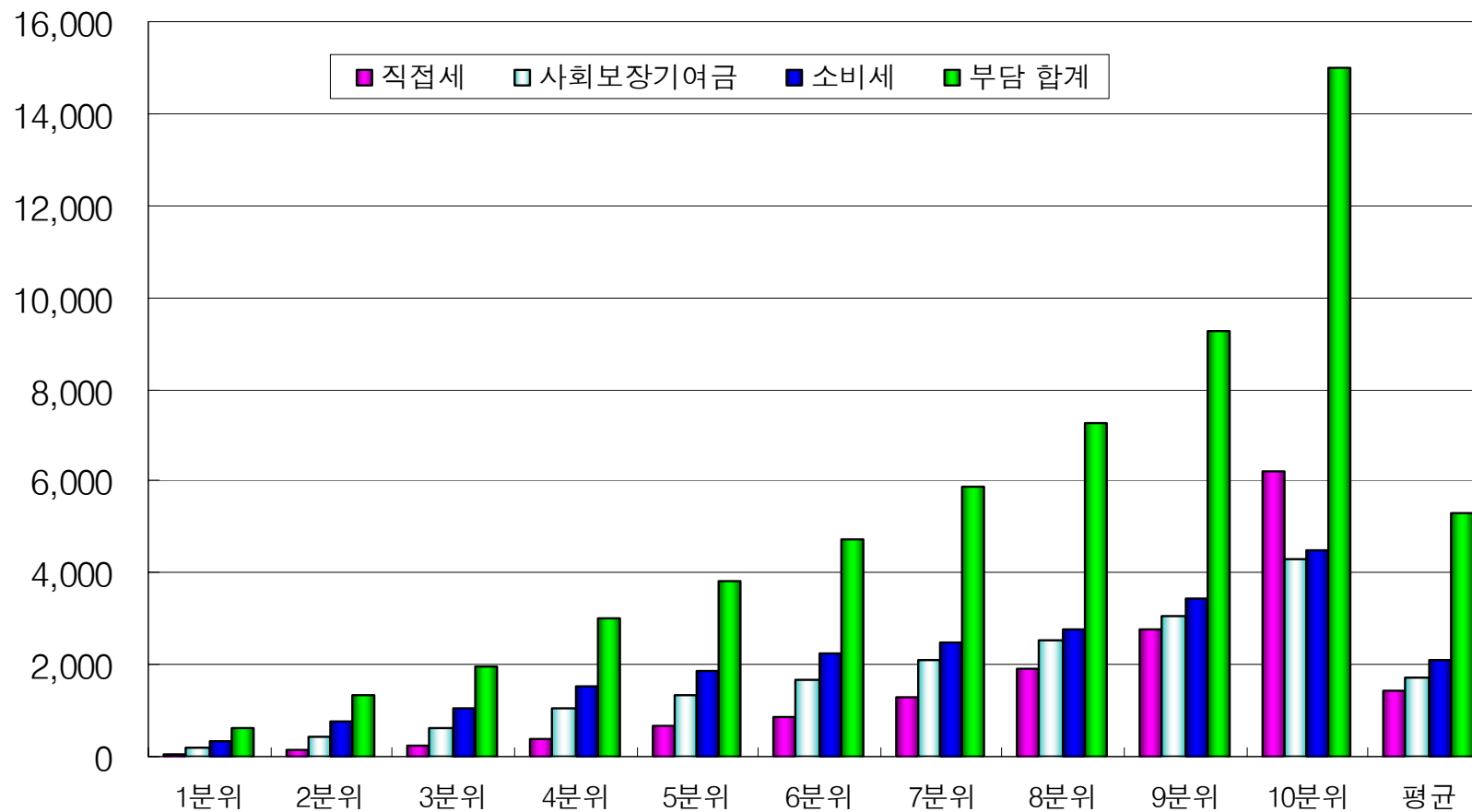
	1분위(1)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2)	평균	배율(2/1)
시장소득	5767	12586	17788	23730	29643	35004	41464	48894	59033	88026	36191	15.3
민간이전소득	1453	1871	2164	1680	1361	1534	1799	1610	2108	2126	1771	1.5
민간소득(I)	7,220	14,457	19,952	25,410	31,004	36,538	43,263	50,504	61,141	90,152	37,962	12.5
직접세(A)	55	165	253	396	646	839	1273	1933	2770	6218	1455	113.1
소득세	14	82	174	285	516	703	1135	1749	2561	5822	1304	415.9
재산세	41	83	79	111	130	136	138	184	209	396	151	9.7
사회보장기여금(B)	200	422	642	1069	1319	1675	2081	2548	3073	4297	1733	21.5
공적연금기여금	47	151	259	478	621	861	1094	1363	1639	2284	880	48.6
건강보험료	149	261	364	553	647	756	915	1099	1319	1867	793	12.5
기타사회보험료	4	10	19	38	51	58	72	86	115	146	60	36.5
간접세(C)	353	765	1066	1532	1871	2225	2503	2772	3417	4466	2097	12.7
부가가치세	255	511	698	983	1194	1429	1616	1848	2272	2995	1380	11.7
특별소비세	23	45	60	95	109	129	138	157	254	351	136	15.3
교통세	26	105	187	334	420	505	585	612	740	959	447	36.9
주세	10	16	23	25	31	27	30	36	40	40	28	4.0
담배세	39	88	98	95	117	135	134	119	111	121	106	3.1
부담(II=A+B+C)	608	1352	1961	2997	3836	4739	5857	7253	9260	14981	5285	24.6
세후소득(I-II)	6,612	13,105	17,991	22,413	27,168	31,799	37,406	43,251	51,881	75,171	32,677	11.4
현금급여(D)	1741	1533	1646	1707	1748	1874	1477	1840	1426	1548	1654	0.9
공적연금	971	942	990	1115	1106	1346	970	1303	994	1181	1092	1.2
기타사회보장수혜	770	591	656	592	642	528	507	537	432	367	562	0.5
현물급여(E)	3083	2841	3294	3869	4267	4944	5009	4973	5193	5517	4299	1.8
기초생보	790	7	0	0	0	0	0	0	0	0	80	0.0
건강보험	1,883	1,829	1,759	1,771	1,682	1,725	1,687	1,610	1,620	1,750	1,732	0.9
교육	377	926	1,446	1,980	2,469	3,106	3,246	3,345	3,562	3,767	2,422	10.0
보육	28	69	74	94	92	93	71	18	11	0	55	0.0
주택	5	10	15	24	24	20	5	0	0	0	10	0.0
수혜소계(III=D+E)	4,824	4,374	4,940	5,576	6,015	6,818	6,486	6,813	6,619	7,065	5,953	1.5
최종소득(I-III)	11,436	17,479	22,931	27,989	33,183	38,617	43,892	50,064	58,500	82,236	38,630	7.2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나. 부담·수혜의 추정

[그림 28] 부담의 소득계층별 분포(2009년)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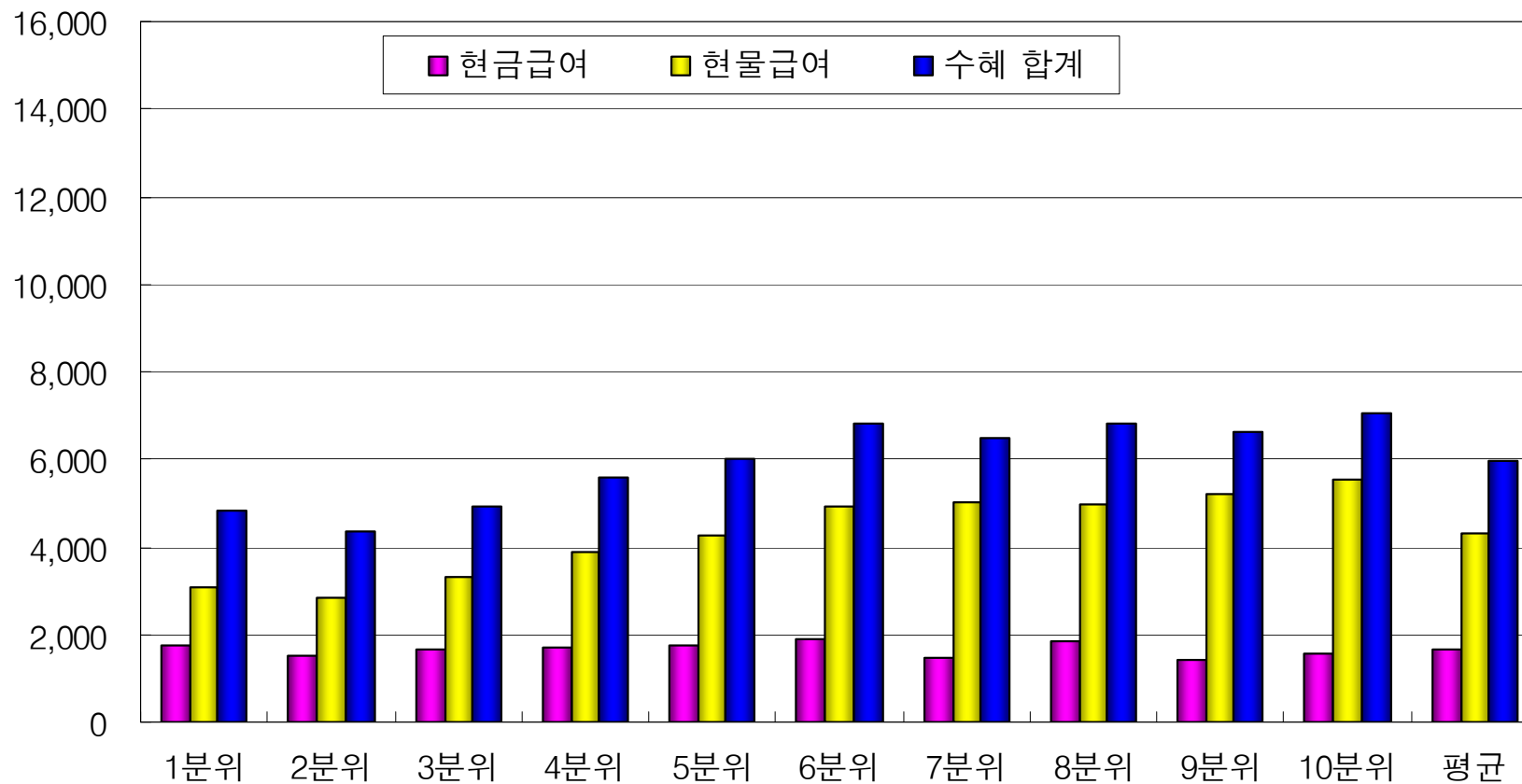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나. 부담·수혜의 추정

[그림 29] 국민혜택의 소득계층별 분포(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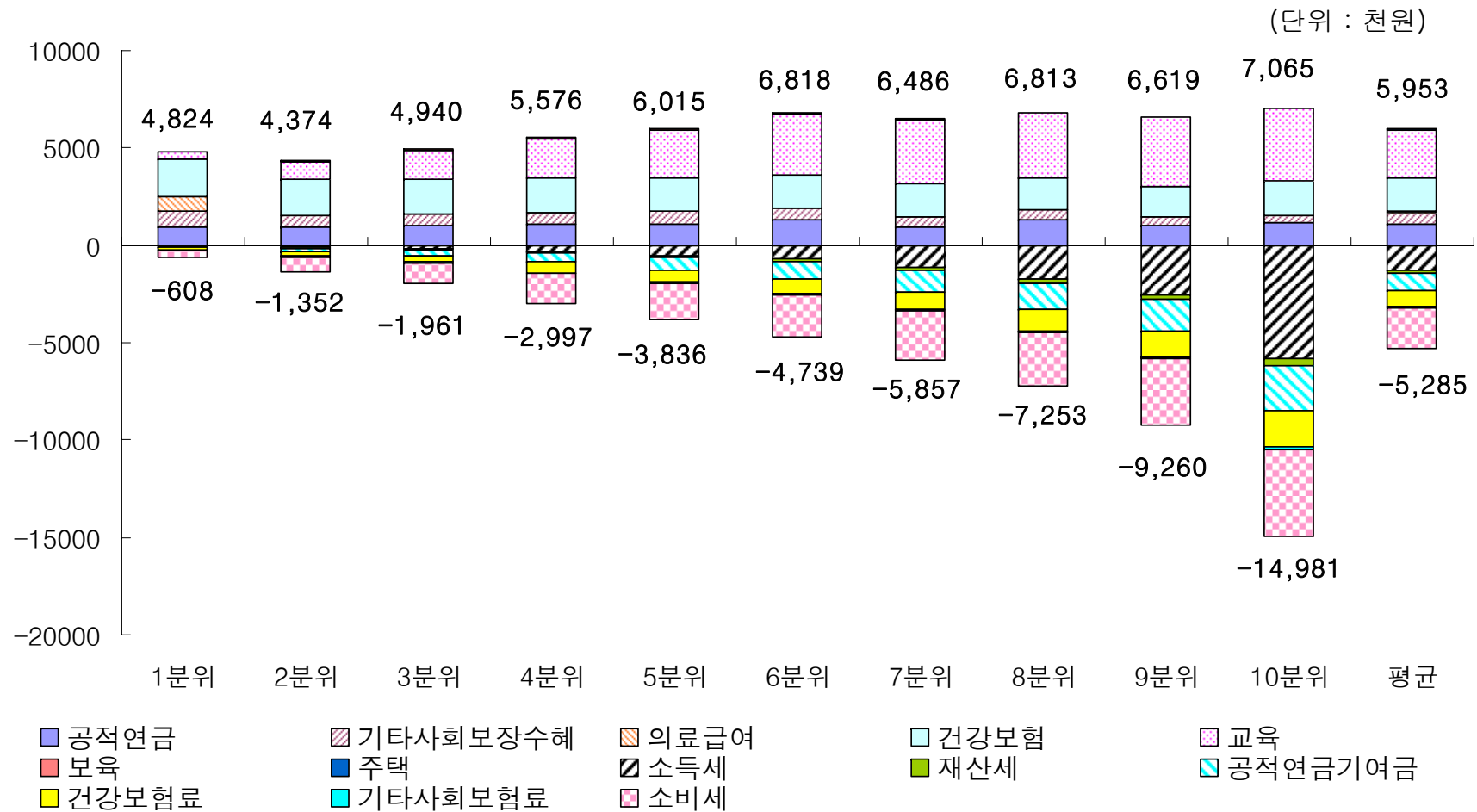
(단위 : 천원)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나. 부담·수혜의 추정

[그림 30] 소득분위별 평균 수혜·부담 분포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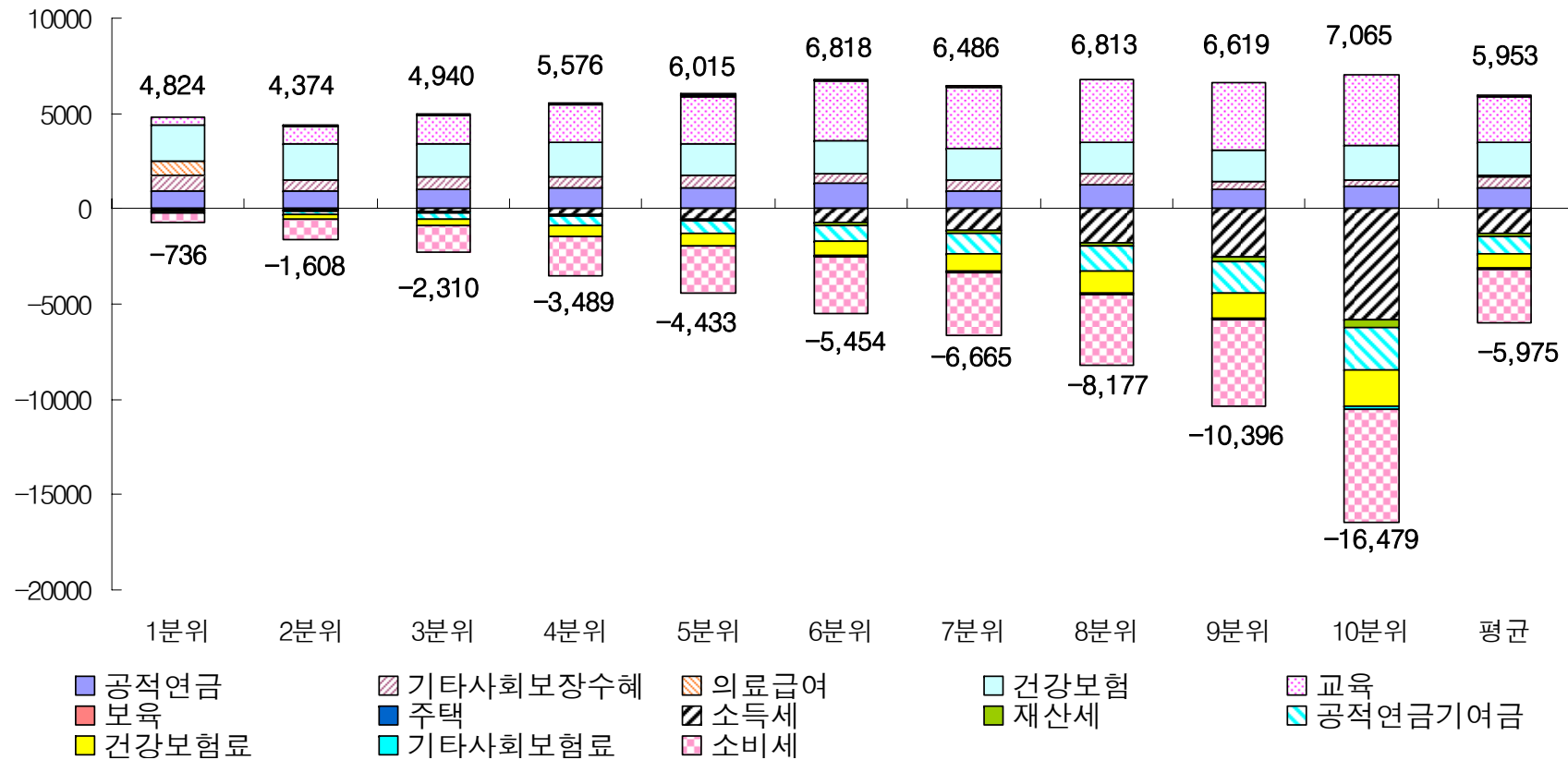
주: 엑셀 작업에 인한 항목별 반올림에 의한 합산 오차로 인해 분위별 수치가 위의 <표>와 약간의 차이 발생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나. 부담·수혜의 추정

[그림 31] 소득분위별 평균 수혜·부담 분포: 부가가치세 조정 (2009년)

(단위 : 천원)



주: 비개인 부담분 부가가치세(개인부담분의 약 50%)를 개인 부담분으로 환산하여 비례적으로 배분한 추정결과임.
이 경우 부담·수혜가 평균적으로 균형상태 (가구당 평균 수혜 592.8만원, 평균 부담 597.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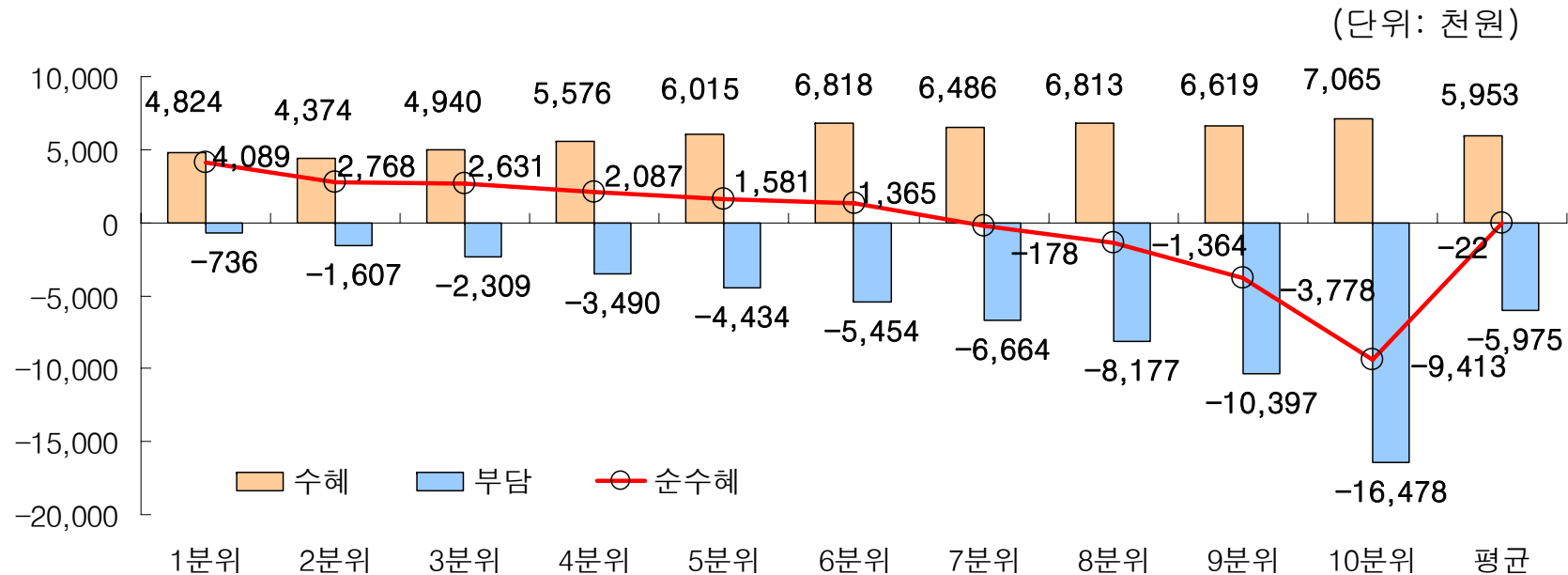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나. 부담·수혜의 추정

- 순수혜 분포 (법인 등 부담분 부가가치세 포함시)
 -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 3,619.1만원
 - 가구당 평균 부담: 592.8만원 (시장소득 대비 16.4%)
 - 가구당 평균 수혜: 597.5만원 (시장소득 대비 16.5%)
 - 1~6분위는 순수혜 가구, 7~10분위는 순부담 가구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부담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그림 32] 부담 및 수혜의 소득계층별 분포(2009년)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다. 부담·수혜구조의 특징

□ 부담구조의 특징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부담액 및 소득 대비 비율도 상승: 누진적 부담 구조
- 특히 소득세, 공적연금, 교통세 등의 누진부담 구조가 두드러짐
- 주세,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이 두드러지나 나머지 소비세는 대체로 비례적 또는 미약한 누진적
- 10분위/1분위 부담 상대비: 22.4(배) (=16,478.5/735.5 천원)

□ 수혜구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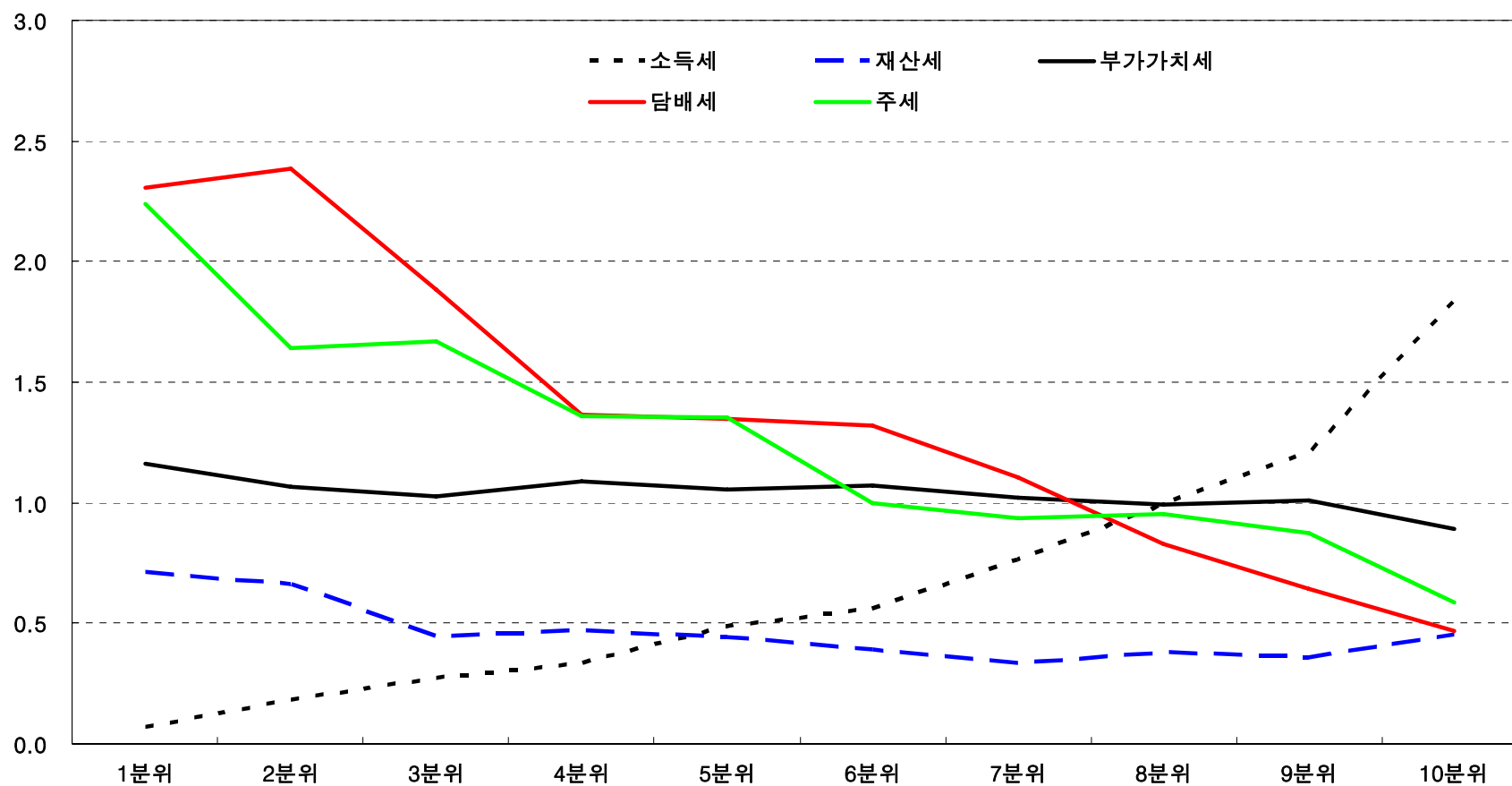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수혜액은 커지나 소득 대비 비율은 하락: 역진적 수혜 구조
- 공적연금, 건강보험급여 등은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은 커지나 실효수혜율은 하락
- 기타사회보장수혜(기초생보 등), 의료급여 등은 저소득빈곤층에 수혜가 집중
- 교육급여 등은 소득보다는 학생 수 등에 의존: 절대수혜 분포가 대체로 균등
- 10분위/1분위 수혜 상대비: 1.5(배) (=7,065/4,824 천원)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다. 부담·수혜구조의 특징

[그림 33] 평균실효세율 대비 소득분위별 부담률 상대비(2009년)

(단위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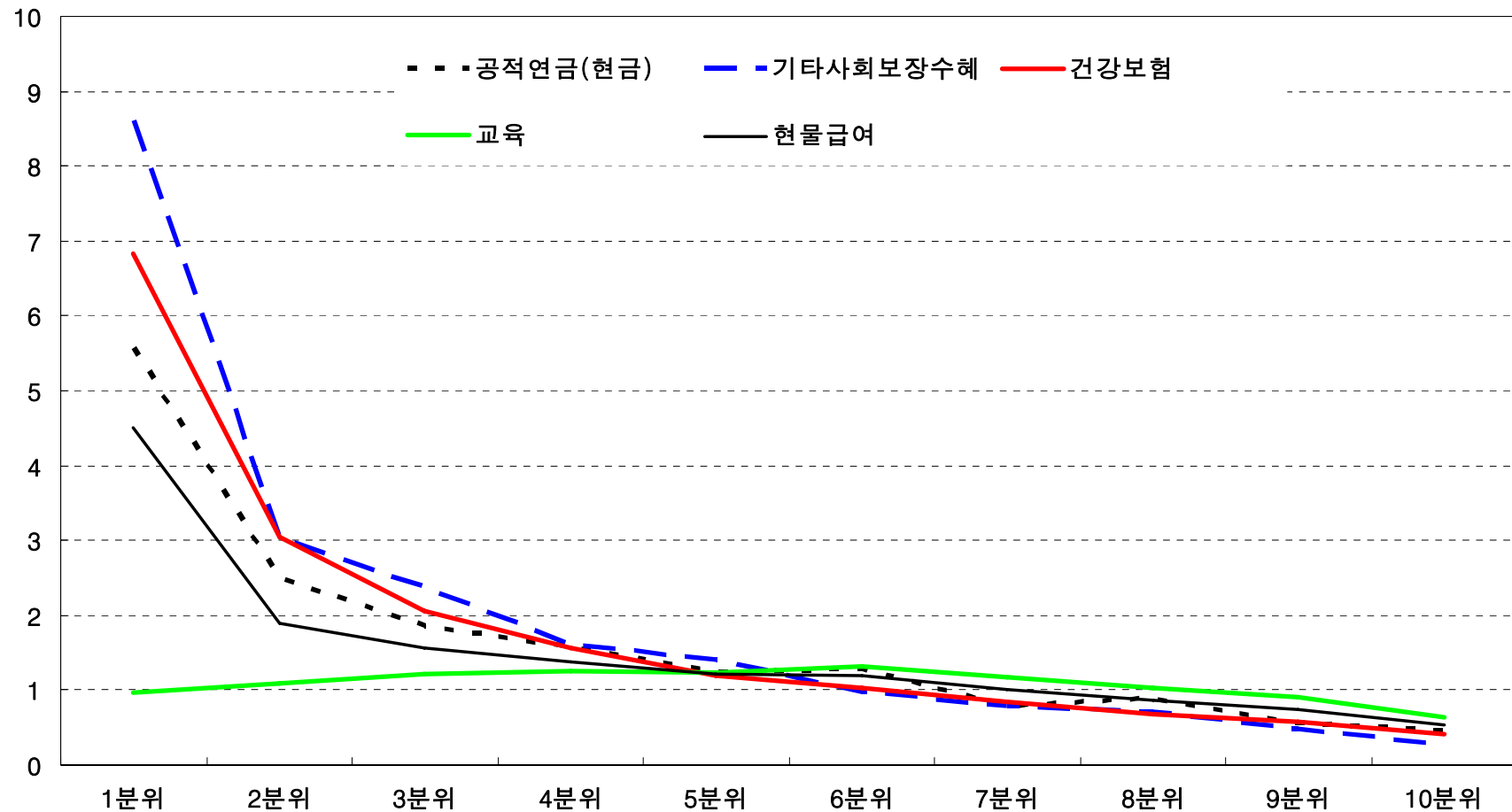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다. 부담·수혜구조의 특징

[그림 34] 평균실효수혜 대비 소득분위별 수혜율 상대비(2009년)

(단위 : 배)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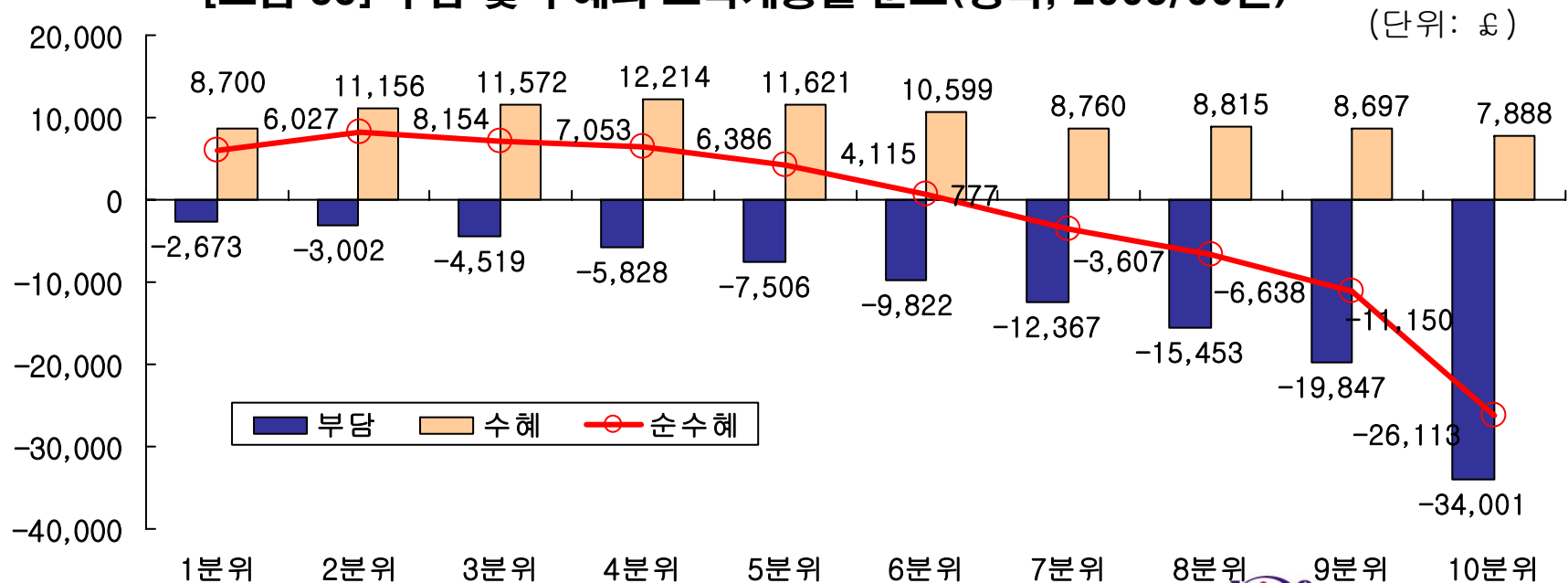
라. 국제비교

□ 국제비교(영국)

-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 28,224파운드
- 순수혜 가구의 범위: 1~6분위로 우리나라와 비슷
- 그러나 (평균)시장소득 대비 1분위와 10분위의 부담·수혜비율은 큰 차이

	평균시장소득 대비 순수혜(1분위),	순부담(10분위)의 비율
한국	10.5%(=3,830/36,566×100)	-25.8%(= -9,430/36,566×100)
영국	21.4%(=6,027/28,224×100)	-92.5%(=-26,113/28,224×100)

[그림 35] 부담 및 수혜의 소득계층별 분포(영국, 2005/06년)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라.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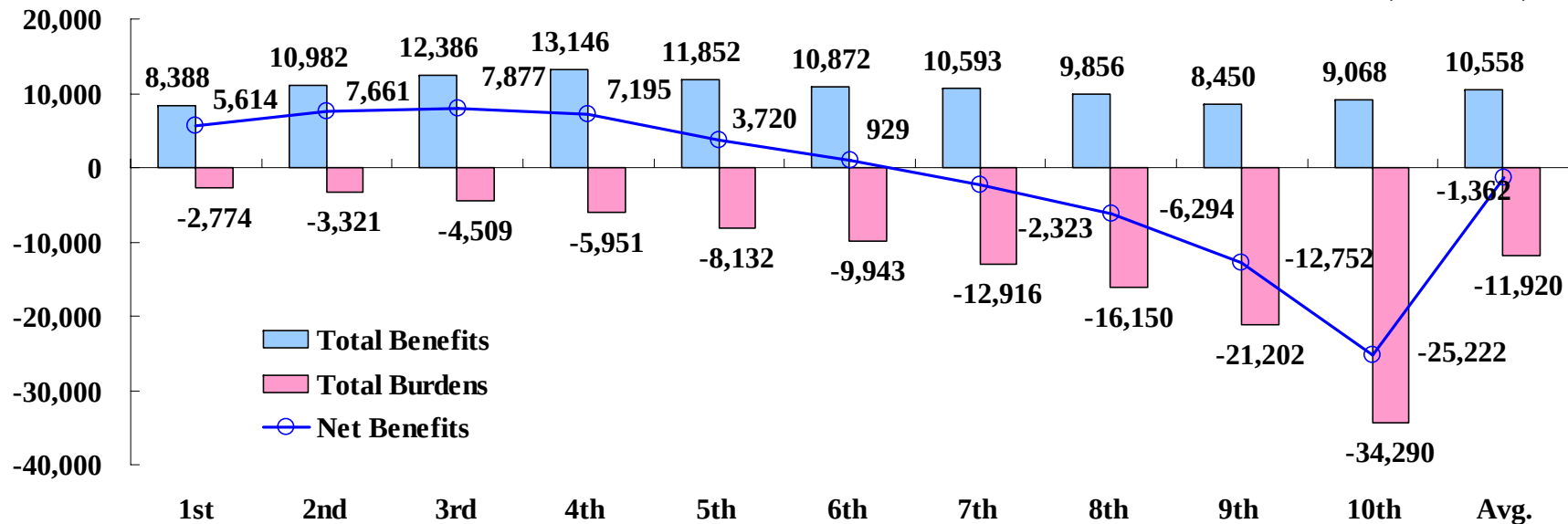
□ 국제비교(영국)

-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 30,485파운드: 순수혜 가구 범위 (1~6분위)
- 부담·수혜의 10분위/1분위 가구당 평균 상대비 비교
-

	부담			수혜		
	10분위(A)	1분위(B)	(A/B,배)	10분위(C)	1분위(D)	(C/D,배)
한국 (2009)	-16,478.5천원	-735.5천원	22.4배	7,065천원	4,824천원	1.5배
영국 (2008/09)	-34,290파운드	-2,774파운드	12.4배	9,068파운드	8,388파운드	1.1배

[그림 35-1] 부담 및 수혜의 소득계층별 분포(영국, 2008/0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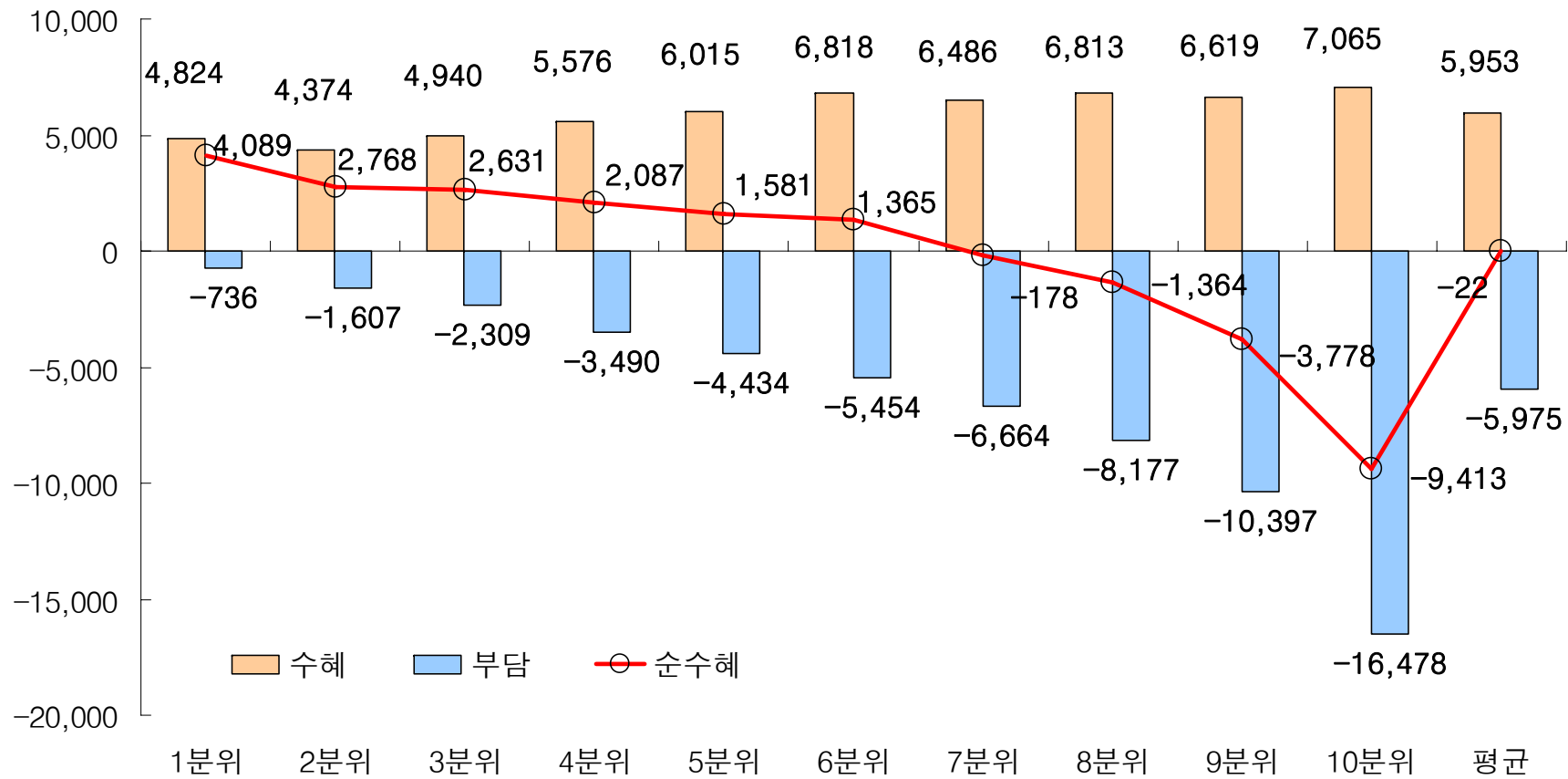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라. 국제비교

[그림 36] 부담 및 수혜의 소득계층별 분포(2009년, 한국)

(단위: 천원)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라. 국제비교

〈표 14〉 영국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세부담·편익 분포(2005-06, 가처분원소득자료 기준)

(단위: £)

가처분소득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평균
Total (Original income)	1,689	3,553	7,145	10,580	16,093	23,301	31,443	40,047	53,344	95,045	28,224
Total cash benefits	4,673	6,758	6,689	6,932	5,939	4,554	3,125	2,810	2,235	1,838	4,555
Gross income	6,362	10,310	13,834	17,512	22,032	27,855	34,569	42,857	55,578	96,883	32,779
Direct taxes and Employees' NIC											
Income tax	144	360	838	1,396	2,085	3,211	4,397	6,020	8,600	18,559	4,561
less: Tax credits ³	3	11	32	79	197	340	240	243	186	50	138
Employees' NI contributions	25	93	299	467	823	1,288	1,816	2,430	3,149	4,059	1,445
Council tax and Northern Ireland rates ⁴	787	795	872	915	940	990	1,061	1,088	1,183	1,429	1,006
less: Council tax benefit/Rates rebates	282	340	251	196	123	71	35	21	14	3	134
Total	670	897	1,726	2,503	3,527	5,078	7,000	9,274	12,732	23,994	6,740
Disposable income	5,692	9,413	12,108	15,009	18,504	22,777	27,569	33,583	42,846	72,890	26,039
Total indirect taxes	2,003	2,105	2,793	3,325	3,979	4,744	5,367	6,179	7,115	10,007	4,762
Post-tax income	3,689	7,308	9,315	11,684	14,525	18,033	22,201	27,404	35,731	62,882	21,277
Education	907	771	1,123	1,340	2,128	2,645	2,402	2,648	3,085	2,582	1,963
National health service	3,023	3,486	3,602	3,786	3,404	3,274	3,111	3,237	3,239	3,269	3,343
Housing subsidy	26	39	46	30	25	14	12	6	3	1	20
Rail travel subsidy	6	11	14	9	20	27	32	43	57	117	33
Bus travel subsidy	53	65	61	72	73	55	55	52	53	78	62
School meals and welfare milk	11	26	37	46	32	30	23	19	24	5	25
Total (Benefits in kind)	4,027	4,398	4,883	5,282	5,682	6,045	5,635	6,005	6,462	6,050	5,447
Final income	7,716	11,706	14,197	16,966	20,207	24,077	27,837	33,409	42,193	68,932	26,724

주: 1.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 Includes age-related payments.

3. Including tax relief at source on life assurance premiums.

4. Council tax and Northern Ireland rates after deducting discounts.

자료: Jones(2007).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라. 국제비교

〈표 14-1〉 영국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세부담·편익 분포(2008-09, 가처분원소득자료 기준)
(단위: £)

가처분소득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평균
Total (Original income)	1,938	4,154	7,333	11,704	18,037	24,856	33,499	43,349	58,479	101,504	30,485
Total cash benefits	4,873	7,029	7,622	7,486	6,155	5,208	4,171	3,242	2,310	2,371	5,047
Gross income	6,811	11,182	14,955	19,190	24,193	30,064	37,670	46,591	60,789	103,875	35,532
Direct taxes and Employees' NIC											
Income tax	133	389	846	1,407	2,319	3,160	4,601	6,156	9,111	18,444	4,657
less: Tax credits ³	4	14	42	114	235	301	284	257	190	99	154
Employees' NI contributions	34	122	289	499	883	1,387	2,035	2,671	3,687	4,698	1,631
Council tax and Northern Ireland rates ⁴	947	941	1,035	1,083	1,137	1,188	1,265	1,349	1,392	1,662	1,200
less: Council tax benefit/Rates rebates	337	364	311	213	138	82	52	28	17	4	155
Total	774	1,073	1,816	2,663	3,967	5,351	7,565	9,890	13,983	24,701	7,178
Disposable income	6,037	10,109	13,139	16,527	20,226	24,712	30,105	36,701	46,806	79,174	28,354
Total indirect taxes	2,000	2,248	2,694	3,289	4,165	4,592	5,350	6,259	7,220	9,589	4,741
Post-tax income	4,037	7,861	10,444	13,239	16,061	20,120	24,755	30,441	39,587	69,585	23,613
Education	817	920	1,499	2,224	2,584	2,619	3,402	3,622	3,231	3,408	2,433
National health service	2,559	2,872	3,086	3,258	2,916	2,889	2,867	2,805	2,729	3,005	2,899
Housing subsidy	32	42	33	35	21	12	10	9	7	4	21
Rail travel subsidy	40	16	12	16	38	36	43	78	98	169	55
Bus travel subsidy	59	83	87	81	83	79	63	63	69	104	77
School meals and welfare milk	9	21	47	45	57	27	37	38	7	10	30
Total (Benefits in kind)	3,515	3,952	4,764	5,661	5,698	5,662	6,421	6,615	6,141	6,699	5,513
Final income	7,552	11,813	15,208	18,900	21,759	25,782	31,176	37,056	45,728	76,284	29,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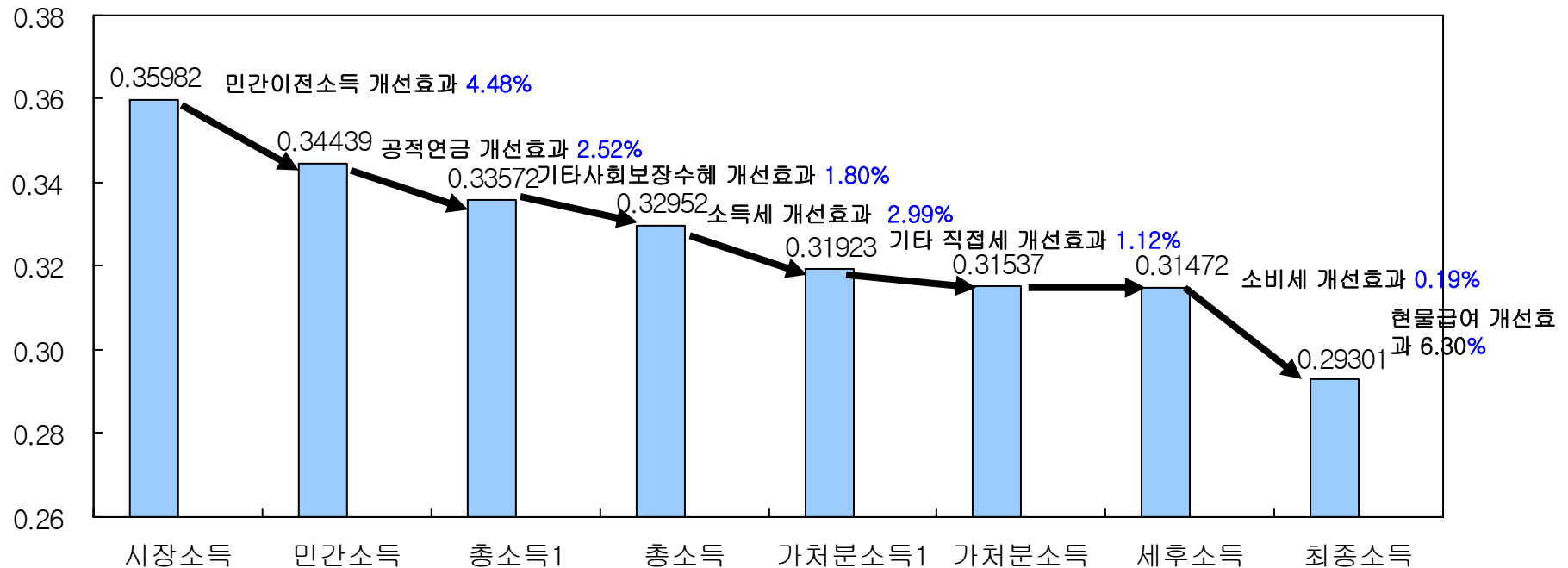
주: 1.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 Includes age-related payments.
 3. Including tax relief at source on life assurance premiums.
 4. Council tax and Northern Ireland rates after deducting discounts.
 자료: Barnard (2010).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마.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는 14.9%
 -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항목: 현물급여(6.24%p), 소득세(2.99%p), 공적연금(2.52%p), 기타사회보장수혜(1.80%p)
 - 소비세의 재분배 효과는 미미한 편(0.19%p): 다른 기간에는 (-)인 경우도 있음.

[그림 37] 주요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2009년)



주: 총소득1 = 민간소득 + 공적연금, 가처분소득1 = 총소득 -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는 민간소득 지니를 분모로 하여 단계별로 측정된 지니계수 변화율로 계산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마.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민간소득→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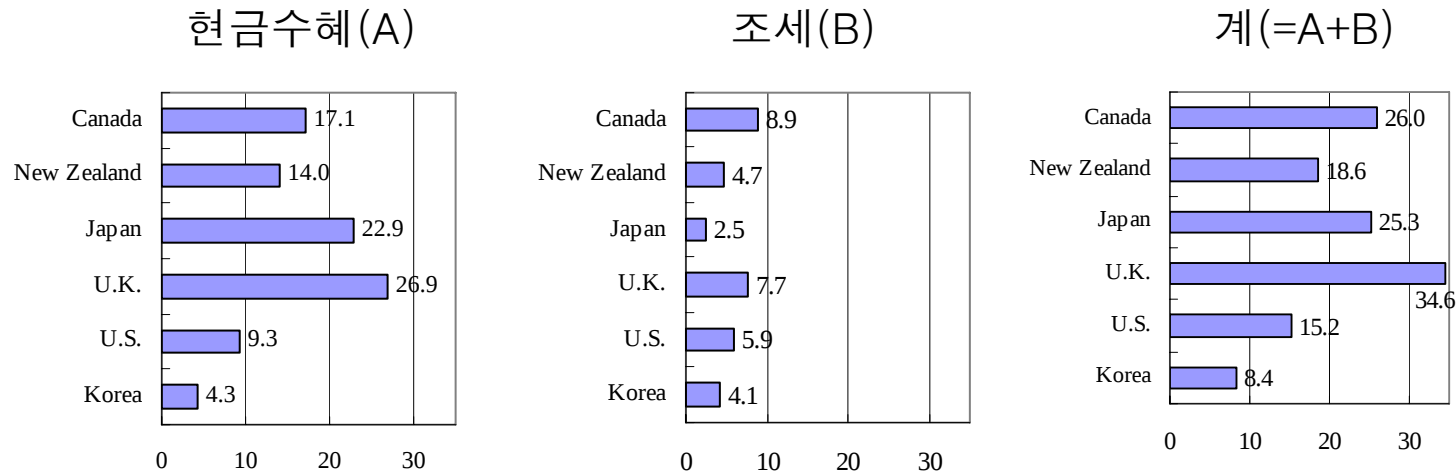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 15.2%(미국)~34.6%(영국)

○ 한국: 8.4%

□ 선진국: 주로 재정지출을 통해 재분배

○ 한국은 현금급여(각종 연금, 기초생보, 실업급여 등)보다는 직접세 통해 재분배

[그림 38]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의 국제비교(OECD 기준 환산치)



Notes: The redistributive effects are measured by tax/benefit-induced percentage changes in Gini coefficients. The figures are calculated based on data from the U.S. Census Bureau (2007) for 2005 data on the U.S., Jones (2008) for 2006/07 data on the U.K., Ministry of Welfare and Labor (2007) for 2005 data on Japan, Hyslop and Yahanpath (2005) for 2004 data on New Zealand, and Statistics Canada (2007) for 2005 data on Canada. The figures for Korea are from the authors' calculations for 2009.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바. 조세·재정재정지출 정책 개편시 예상 효과

- 1조원 증세 및 재정지출의 동시적 확대시 예상 효과
 - 순수혜·순부담 계층의 분포를 통해 잠재적 정책선택도를 분석

〈표 15〉 항목별 1조원 증세·지출증대시 가구당 국민부담·지출수혜 분포

(단위: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세	641	3,754	7,966	13,047	23,622	32,183	51,960	80,068	117,241	266,528
부가가치세	11,031	22,105	30,194	42,523	51,650	61,816	69,905	79,941	98,283	129,558
교통세	3,472	14,023	24,974	44,605	56,091	67,442	78,126	81,732	98,826	128,073
담배소비세	21,964	49,559	55,191	53,501	65,891	76,028	75,465	67,018	62,512	68,144
건강보험료	11,217	19,648	27,402	41,629	48,706	56,911	68,880	82,732	99,293	140,546
부담합계	48,324	109,089	145,726	195,306	245,960	294,381	344,337	391,491	476,155	732,850
기초생보	589,502	5,223	0	0	0	0	0	0	0	0
건강보험	64,901	63,040	60,627	61,041	57,973	59,455	58,145	55,491	55,836	60,317
교육	9,292	22,824	35,640	48,802	60,855	76,555	80,006	82,446	87,795	92,847
열유아보육	30,391	74,892	80,319	102,027	99,856	100,941	77,063	19,537	11,939	0
주택	29,848	59,696	89,545	143,271	143,271	119,393	29,848	0	0	0
혜택합계	723,934	225,675	266,131	355,140	361,955	356,344	245,062	157,474	155,570	153,164
순수혜	675,609	116,586	120,404	159,834	115,995	61,964	-99,275	-234,016	-320,585	-579,686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바. 조세·재정재정지출 정책 개편시 예상 효과

〈표 16〉 국민부담 및 사회지출 1조원씩 증가시 소득계층별 순수혜 계층의 범위(2009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세-교육										
소득세-보육										
소득세-건보										
소득세-기초생보										
부가세-교육										
부가세-보육										
부가세-주택										
교통세-교육										
교통세-주택										
담배-교육										
담배-건보										
건보-교육										
건보-건보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순수혜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나타냄.

5. 조세·재정지출의 귀착분석

바. 조세·재정재정지출 정책 개편시 예상 효과

- 수혜대상의 범위가 좁은 지출정책(예: 기초생보 등 빈곤층 한정 정책)일수록 정치적 지지 획득이 곤란
 - 반면 부담 범위가 좁을수록 잠재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지계층 확보 가능
- 따라서 수혜대상범위가 넓고 (또는 보다 균등하고) 부담범위가 좁은 정책일수록 잠재적인 정책조합의 채택가능성이 높음.
 - 교육지출은 수혜계층이 매우 광범위하고 소득세는 부담계층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잠재적 채택가능성이 높음.
 - 담배소비세와 주세 등 세부담이 역진적인 세목은 최악세로서 소비억제가 요청되는 세목이지만 잠재적 채택가능성은 낮은 편
- 정책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바람직하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감사합니다
